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편람

202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3항, 시행규칙 제191조에 따라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대상기간 : 2020.1.1. ~ 2021.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2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계(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붙임2]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등급	기준
S등급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거부」 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

6. 평가일정

- 평가실시 : 2022. 3. 28.(월) ~ 6. 30.(목)
 - ※ 기관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평가실시 기간은 「코로나19」 경보 수준 또는 외부전문가 일정에 따라 연장 가능
-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22. 9월(예정)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2. 9월(예정)
 -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검토·심의
 -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붙임3] 참조
-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 2023. 1월

7.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덧붙임1) 참조, **“3월 25일까지”** 제출]

- 기관이 자체평가 양식을 활용하여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제출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덧붙임2) 참조]
-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 여부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에 따라 점수(최대 +10) 부여

※ 제출양식 등 관련자료 확인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작업환경측정기관 → 자료실 → 평가 실시 알림 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

8. 기타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52-7030-102, 02-6924-8854)에게 문의바랍니다.

2022년 3월 11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목 차

I. 평가 개요	1
----------------	---

※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대상 현황

II. 2022년 평가 세부추진 계획	15
----------------------------	----

III. 2022년 평가지표 개선요약	21
----------------------------	----

IV. 2022년 평가지표	27
----------------------	----



평가 개요

I. 평가 개요

1 목 적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수준 향상 유도**

☞ 법적 근거

- **(법 제126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 ① 공단이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과 그 결과의 신뢰도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2 추진방침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178개 기관)**
* 평가계획 공고 예정일(22.3.11.) 기준 지정일 1년 미만 기관 9개소 제외
- **공단 내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평가 실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실무 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 구성
- **기관의 평가 준비,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설명자료(편람 책자, 동영상) 제작·배포로 대체**
-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 평가반 구성·운영 및 워크숍 개최**
- **평가반은 외부전문가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

- 그간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지표 보장 및 기준 강화**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쟁력 향상 및 사업주의 우수기관 선택권 부여**

3 그 간의 사업추진 경과

□ 주요 평가추진 경과

구분	'16년 평가	'18년 평가	'20년 평가
평가주체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공단
평가기관	▪ 공단 직업건강실	▪ 공단 네트워크협력실	▪ 공단 공공기관평가실
평가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39호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7호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평가분야	▪ 4개 분야 ① 측정 및 시료분석능력 ② 측정결과신뢰도 ③ 시설·장비의 성능 ④ 보유인력 등	▪ 2개 분야 ① 운영체계 ② 업무성과	▪ 2개 분야 ① 운영체계 ② 업무성과
평가문항	▪ 49개 문항	▪ 45개 문항	▪ 48개 문항
평가등급	▪ 4단계 평가등급 (500점 만점) [S, A, B, C]	▪ 4단계 평가등급 (1,000점 만점) [S, A, B, C]	▪ 5단계 평가등급 (1,000점 만점) [S, A, B, C, D]
평가결과활용	▪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① 점검면제, ② 정부포상 우선 추천, ③ 민간위탁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④ 홈페이지 공개 ▪ 불량기관 제재 ① 위탁사업장까지 점검, ② 정부포상 제외, ③ 작업환경측정비용 및 민간위탁사업 참여 배제		

□ 그 간의 평가결과 현황

등급 구간	2016년		2018년		2020년	
	기관수(개소)	점유율(%)	기관수(개소)	점유율(%)	기관수(개소)	점유율(%)
총 계	151	100	159	100	172	100
S등급	25	16.6	14	8.8	28	16.3
A등급	84	55.6	102	64.1	107	62.2
B등급	39	25.8	41	25.7	34	19.8
C등급	3	2.0	2	1.4	3	1.7
D등급	-	-	-	-	0	0

4 평가대상 및 추진절차

- 평가기간 : '22. 3월 ~ 6월
 - * 외부전문가 일정에 따라 8월까지 연장 가능

- 평가대상 :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178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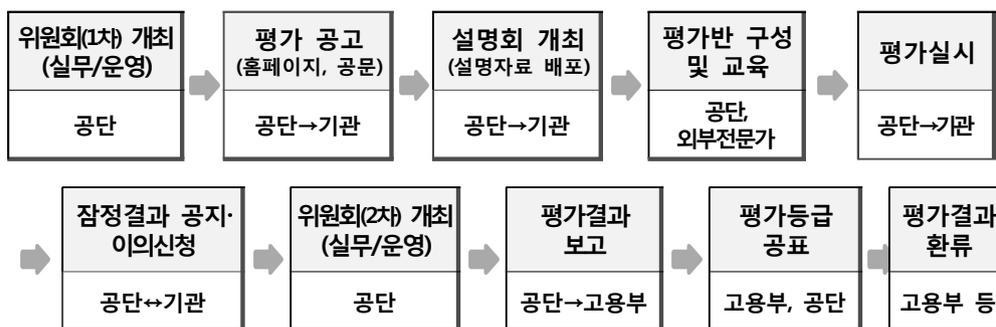
(단위: 개소)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작업환경측정기관	178	9	71	39	22	12	25

* 공고일 기준 지정일 1년 미만 기관 제외

- 평가대상기간 : 최근 2년간 업무 (2020.01.01. ~ 2021.12.31.)

- 추진절차



참고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대상 현황(178개소)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1	서울청	2016-07-07	(주)한국보건환경연구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87, 2층 (성수동2가, 성문빌딩) (성수동2가 315-7)
2	서울청	2013-04-23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36 (잠원동,용진빌딩) 2층
3	서울청	2012-08-29	경희의료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회기동, 경희의료원 총무팀) (36-8번지)
4	서울청	2011-05-02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반포동) (505번지)
5	서울청	2006-11-14	(재)씨젠의료재단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20 (용답동) (2-3번지)
6	서울청	1999-04-24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2층 210호 (가산동) (60-4번지 2층 210호)
7	서울청	1994-07-16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교병원 (한남동 657-138)
8	서울청	1993-03-24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사근동, 한양대학부속병원) (110번지)
9	서울청	2020-12-09	소중한산업보건연구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8 0동 8층 814호
10	중부청	2020-12-28	건강한인터환경보건건설링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 8 401, 402호 (오류동)
11	중부청	2020-12-02	한도산업보건센터(주)	경기 시흥시 군자로487번길 3 (거모동) 층 02호
12	중부청	2020-06-03	한국보건안전연구소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901호
13	중부청	2020-05-29	(주)대성작업환경센터	경기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61 4층 403호 (상동, 드라마씨티) (533-1번지)
14	중부청	2019-12-09	주식회사대한작업환경 연구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41-25 (장기동) 1층
15	중부청	2019-11-25	대한보건환경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717호 (상대원동, 크란츠 테크노) (5442-1번지)
16	중부청	2019-07-22	(사)대한산업보건협회강원 산업보건센터	강원 춘천시 중앙로 172 (삼성타워 7,8층)
17	중부청	2019-01-24	(사)대한산업보건협회인천 산업보건센터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12 (주안동) 2층
18	중부청	2018-12-17	주식회사바른보건환경 연구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57-2 (평촌동, 아이에스비즈타워) 712호
19	중부청	2018-12-13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381 (정왕동)
20	중부청	2018-07-12	온누리산업보건건설링 주식회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양촌읍, 이젠 아파트형 공장) 304,305호
21	중부청	2018-06-20	라움보건환경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82 2층 (왕림리) (294-2번지 왕림리 2층)
22	중부청	2017-08-28	미추홀작업환경측정센터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은청로 18 (고잔동, (주)남동상공센터) 202호
23	중부청	2017-06-13	주식회사한국EHS연구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14 (사동) 401호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24	중부청	2017-06-12	주식회사한국작업환경 연구원	경기 시흥시 목감들레로 258 (조남동, 메트로타워1) 701호
25	중부청	2017-06-08	주식회사에스엠작업환경 측정센터	경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520 A동 201,202호 (287번지 A동 201,202호)
26	중부청	2016-12-21	(주)우리작업환경센터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73번길 52 3층 304호 (래미안프라자)
27	중부청	2016-11-29	주식회사단원산업보건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64 (초지동, 키즈타워2) 410호
28	중부청	2016-07-25	버팀산업보건센터주식회사	경기 오산시 운천로 99 (오산동, 2층)
29	중부청	2015-08-04	(주)해성환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79번길 35 (호계동)
30	중부청	2015-05-20	주식회사지안보건환경 연구소	인천 연수구 송도2동 (송도동) 29-13 IBS빌딩 7층 701호
31	중부청	2014-11-21	인천보건환경센터주식회사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114 5층 (도화동) (952번지 5층)
32	중부청	2014-06-03	대한산업보건평가원(주)	경기 화성시 효행로 972 301호 (진안동 485-5)
33	중부청	2013-06-10	주식회사 성모제일산업 보건연구소	경기 안성시 중앙로400번길 24 (서인동 23-0)
34	중부청	2013-04-25	케이아이안전보건기술원 (주)	인천 서구 검암로30번길 10 201호 (검암동) (506-3번지 201호)
35	중부청	2013-04-08	정해산업보건연구소(주)	경기 광명시 도덕로 14 2층 (광명동) (2층)
36	중부청	2013-01-09	백산업환경연구소(주)	경기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69 (오성면) 2층 (206번지 안중장례식장 1층)
37	중부청	2012-07-09	주식회사현대유비스산업 보건센터	경기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춘의동) 201동 1501호 1502호 (춘의테크노파크)
38	중부청	2012-04-13	에이치에스이코리아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송도동, 송도BRC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E동 607호 (785-7번지 3층)
39	중부청	2011-10-21	(주)진성환경보건센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12 도촌 대덕프라자 605호,606호 (도촌동)
40	중부청	2011-10-11	굿모닝산업보건센터(주)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43-8 (합정동) 3층 (875-13번지)
41	중부청	2011-10-07	(주)중앙안전보건연구원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1 2층
42	중부청	2010-11-02	국제산업보건연구소(주)	경기 평택시 세교로 4-6 (세교동) 501호 (111번지 6층)
43	중부청	2010-07-13	(주)김포산업보건연구원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1985 2층 (통진읍 도사리 843-15)
44	중부청	2009-12-02	미래환경보건연구소(주)	경기 군포시 금당로17번길 14 (당동, 광개토프라자) 301호 (960-1번지 태평양플라자3층 303)
45	중부청	2008-12-29	(주)원일환경안전연구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6 대덕프라자 302 303호 (고잔동)
46	중부청	2008-12-11	한국RMS(주)-지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52 (행신동 745) 청암프라자 3층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47	중부청	2008-12-02	(주)나사렛국제병원 산업의학연구소	인천 연수구 영고개로246번길 10 대산프라자 7층 701호 (동춘동 937-1)
48	중부청	2008-11-05	(주)사랑작업환경연구소	인천 남구 염전로 330 주안 J Tower 1차 지식산업센터 1221호 (주안동 5-2)
49	중부청	2008-11-04	(주)사람과환경연구소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부천테크노밸리 U1 center723호(원미동 39-1)
50	중부청	2008-10-07	(주)청담이엠텍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13-1 (의정부동, 청담빌딩) (542-7번지 청담빌딩)
51	중부청	2008-06-09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37 (정왕동) (1366-11번지)
52	중부청	2008-05-23	(주)우리산업보건센터 (WISHc)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82 210호 (사우동, 사우프라자) (876번지 사우프라자 210호)
53	중부청	2008-04-29	산업환경보건연구소(주)	인천 서구 검단로 480 (왕길동, 검단리치웰프라자) 601호 (검단지구 64블럭 4,5롯데 뷰비스타운 5층 505)
54	중부청	2007-05-08	인천산업환경센터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23 (간석동) 3층 (179-3번지)
55	중부청	2007-05-02	작업환경기술원(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61 (탑동, 신아빌딩) 302호
56	중부청	2006-09-12	(주)한국산업보건연구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0 4층 (서둔동) (17-150번지 4층)
57	중부청	2006-05-09	(주)한국산업보건연구원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80 (논현동, 나로프라자) 201호 (439-5번지 49B 6L)
58	중부청	2006-04-19	오산한국병원	경기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 4필지 (원동) (560-70번지 4필지)
59	중부청	2006-04-18	수원중앙병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54 수원중앙병원 (권선동 967-1)
60	중부청	2006-01-09	(주)용인서울산업보건 연구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38 (511-3번지 2층)
61	중부청	2005-12-28	(주)한성산업의학연구소	경기 군포시 산본로86번길 1-1 (당정동) (949-9번지 덕우빌딩 2층)
62	중부청	2005-10-27	(주)금강산업보건연구원	경기 이천시 증신로 39 (갈산동) 2층
63	중부청	2005-05-04	(의료재단)화성중앙병원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 (74-1번지)
64	중부청	2005-04-06	나은병원	인천 서구 원적로 23 나은병원 (가좌동 277-7)
65	중부청	2005-04-01	경기산업보건센터(주)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 9 (가능동, 수신빌딩) (685-11번지)
66	중부청	2004-04-12	(재단법인)제일산업의학 연구소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334 202,301,302,401,501 (정왕동) (1780-1 은성빌딩202,301,302,401,501)
67	중부청	2002-11-01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근로복지 공단 인천병원) (47-15번지)
68	중부청	2002-10-29	(학교법인)아주대학교 의료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원천동, 아주대학교 의료원) (39-2번지)
69	중부청	2001-01-16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안양샘병원 인사총무팀 (안양동)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70	중부청	2001-01-04	고려대부속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 (516)
71	중부청	1999-10-16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86 (신길동) 신우프라자 2~5층
72	중부청	1999-07-06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	인천 중구 인항로 27 (신흥동3가) (7-206)
73	중부청	1999-04-04	(주)한국안전환경연구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77 2층 (권선동) (1057-11번지 2층)
74	중부청	1998-03-23	(의료법인)길의료재단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구월동) (1198번지)
75	중부청	1992-09-2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원주기독병원) (97-3번지 원주기독병원)
76	중부청	1992-07-18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42 (의정부동) (556번지)
77	중부청	1992-07-01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미디어시티 빌딩 5층 (인계동) (1036번지)
78	중부청	1992-01-15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동해병원) (190번지)
79	중부청	1991-07-01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일동) (95번지)
80	중부청	1991-06-12	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우만동) (441번지)
81	부산청	2019-05-23	주식회사숲길직업환경 연구소	경남 김해시 전하로 69 (흥동)
82	부산청	2017-12-01	주식회사갑을녹산산업 보건센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송정동)
83	부산청	2017-07-31	주식회사이엔직업환경 연구소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7 (부전동, 가회빌딩) 6층
84	부산청	2017-07-17	(주)와이케이환경	경남 양산시 고향의봄9길 4, 2층 (북정동)
85	부산청	2017-06-12	(주)더바른환경연구원	부산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41 (금곡동) 5층
86	부산청	2017-02-08	주식회사가온직업환경 연구원	부산 동래구 미남로132번길 13 (온천동)
87	부산청	2016-06-13	주식회사국일환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2로 69-19 (화전동)
88	부산청	2016-06-07	(주)진주고려병원산업 보건센터	경남 진주시 동진로 275 (상대동)
89	부산청	2015-11-17	주식회사인세산업보건 센터	부산 강서구 대저로255번길 33 (대저1동) 2층
90	부산청	2015-11-13	주식회사경상고려산업 환경연구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34번길 6-1 (신안동) 2층
91	부산청	2015-07-13	보원의료재단경희의료원 교육협력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김해중앙병원) (1044-5번지 김해중앙병원)
92	부산청	2015-05-11	주식회사디에이치환경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 4 (삼계동, 가야빌딩) 3층
93	부산청	2013-11-01	주식회사터직업환경의학 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39번길 6 310 (중앙동) (100-6번지 제일상가 310)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94	부산청	2013-10-25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 좋은삼산병원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26 (주례동) (193-5번지)
95	부산청	2011-06-08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21 (명지동) (21 (명지동))
96	부산청	2011-04-05	주식회사 힐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팔용동) 23번지 7호 신화테크노밸리 5층 10호 (541-9번지) 경남지능형출산업화센터 연구동2동 403~405호)
97	부산청	2010-11-09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 병원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전하동) (290-3번지)
98	부산청	2010-11-03	(주)중앙산업보건환경센터	울산 남구 신정동 1125-11
99	부산청	2010-04-30	(주)우리작업환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로 120 (물금읍) 3층 (897-4번지 양지병원 3층)
100	부산청	2010-03-29	중앙산업보건센터(주)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21 (외동) 상가동 101호 (1049-3번지)
101	부산청	2009-07-1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762-1번지)
102	부산청	2008-11-17	(주)누리환경기술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5번길 16 5층 (웅남동) (61-47번지 5층)
103	부산청	2007-12-27	실내환경연구소(주)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재송동, 센텀 아이에스타워) 1609호
104	부산청	2007-12-18	(주)대한환경이엔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73번길 37 (온천동) (1379-14번지)
105	부산청	2007-01-23	굿모닝보건환경(주)	울산 남구 돌질로 406-1 (삼산동, 굿모닝보건 환경) (190-6번지 굿모닝보건환경)
106	부산청	2003-04-23	(주)삼성환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88 A동 215호(봉암동, 봉암동공구상가)
107	부산청	2003-01-14	(주)하나환경보건컨설팅	경남 김해시 가야로 228 (구산동, 김해시보훈 회관 2층) (469-2번지 청조빌딩 4층)
108	부산청	1998-12-01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명서동)
109	부산청	1998-07-02	주식회사신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성산동, 넥스 701) (77-1번지 넥스 701)
110	부산청	1998-03-19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창원병원) (104-1번지)
111	부산청	1998-03-19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	경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38 (양덕동 974-17)
112	부산청	1993-02-01	(의료법인)대우의료재단	경남 거제시 두모길 16 (두모동, 대우병원) (459번지 대우병원)
113	부산청	1993-01-11	인제대학교 산업보건센터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어방동, 인제대학교) (어방동 607)
114	부산청	1992-08-25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울산 북구 염포로 700 (양정동) (700번지)
115	부산청	1991-08-17	(의)동강의료재단	울산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116	부산청	1991-06-19	대한산업보건협회울산 산업보건센터	울산 남구 두왕로64번길 5-14 (선암동)
117	부산청	1991-05-15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39 (청룡동) (80-4)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118	부산청	1987-03-09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의료원 (암남동) (34번지 고신의료원)
119	부산청	1983-02-25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부산백병원 (개금동 633-165)
120	대구청	2020-12-21	주식회사미래산업보건연구소	경북 구미시 산동읍 산호대로43길 18-7 (봉산리) 1층 1호, 2호
121	대구청	2017-11-24	(주)경북직업환경연구소	경북 안동시 강남1길 77 (정하동)
122	대구청	2017-06-16	(주)이에이치에스연구소	대구 북구 연경지모로 8 503호
123	대구청	2015-10-13	대한보건환경연구소(주)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76 (대잠동, 학림빌딩) 3층
124	대구청	2015-05-14	(주)중앙직업환경보건센터	경북 경산시 경안로 7 (백천동) 3층
125	대구청	2014-04-25	주식회사아이이에스에이치솔루션	경북 구미시 1공단로2 12 (공단동, 한라시그마밸리) 8층 819호
126	대구청	2012-05-01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	경북 경산시 경안로 208 (중방동) (848-4번지)
127	대구청	2008-12-16	구미강동병원	경북 구미시 인동20길 46 (진평동) 210-2번지
128	대구청	2007-12-10	유성보건건설링(주)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1번길 40 (장성동) (1504-1번지)
129	대구청	2007-06-21	(주)대구가톨릭산업보건센터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갈산동) (123-4번지)
130	대구청	2006-11-08	세명직업환경측정(주)	경북 경주시 금성로 369 3층 (성건동) (167-5번지 3층)
131	대구청	2006-06-21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40 (호림동) (19-15번지)
132	대구청	2006-04-26	대주한의대학교산업보건연구소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광역시한의대학교 종합과학관 3 (유곡동)
133	대구청	1999-06-30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28 (28)
134	대구청	1999-06-30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 영남이공대학교 (대명동 317-1)
135	대구청	1997-02-11	(의료법인)안동의료재단	경북 안동시 양실로 11 (수상동) (574-2번지)
136	대구청	1993-06-30	(재단법인)포항성모병원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대잠동) (270-1번지)
137	대구청	1993-03-10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000-2번지)
138	대구청	1993-01-27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모전동) (188)
139	대구청	1992-12-26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석장동) (1090-1번지)
140	대구청	1992-10-01	(주)포스코 부속의원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45 포스코내
141	대구청	1991-07-15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79 (공단동, 순천향병원) 250번지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142	광주청	2019-07-01	사단법인대한산업보건협회제주산업보건센터	제주 제주시 첨단로3길 10 (영평동)
143	광주청	2018-12-03	직업환경연구소주식회사 전남센터	전남 여수시 소라면 무선로 451 (1246-7번지)
144	광주청	2018-11-30	주식회사더불어산업보건센터	전남 순천시 팔마5길 66 (연향동) 2층
145	광주청	2016-07-19	한길산업보건센터주식회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0 (만성동, 월방빌딩) 304호
146	광주청	2016-07-14	김병원산업보건센터 주식회사	광주 동구 중앙로 211 6층 (대인동) (158-3번지 6층)
147	광주청	2014-10-22	직업환경연구소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월전동) 평동비즈니스센터 6층 601호
148	광주청	2012-10-22	광양사랑병원	전남 광양시 공영로 71 (중동,사랑병원)
149	광주청	2007-03-20	(재)한국의학연구소 광주분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타임스타워 8~10F
150	광주청	2003-04-10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815-8번지)
151	광주청	1992-12-15	(주)포스코광양제철소	전남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 (금호동)
152	광주청	1990-03-01	(사단법인)대한산업보건협회전북산업보건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 (여의동) (654-1번지)
153	광주청	1981-03-17	(사)대한산업보건협회광주전남북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사암로 414 (흑석동) (534번지)
154	대전청	2020-05-25	연세보건환경연구소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7 (관평동, 대덕비즈센터) 씨동222호
155	대전청	2019-12-18	산업보건연구소더함 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8 4층 402호 (원성동) (135-19번지 4층 402호)
156	대전청	2017-12-21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지족동, 유성선병원) (923번지 유성선병원)
157	대전청	2017-06-01	한성보건안전기술원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803 (장대동, 국당빌딩 501호)
158	대전청	2017-02-24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쌍용동, 충무병원) (542-3번지)
159	대전청	2016-12-01	주식회사세명산업보건	충북 충주시 대가미3길 5-1 (칠금동)
160	대전청	2013-11-06	산업보건연구원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동, 두정프라자) 204호
161	대전청	2013-04-08	(주)한국직업환경연구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29 (3층)
162	대전청	2011-03-17	의료법인백제병원	충남 논산시 취암동 21-14번지
163	대전청	2010-11-16	(주)미래보건환경연구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6길 31 (1649-6번지)
164	대전청	2009-04-13	(주)충북산업환경	충북 충주시 호암중앙1로 47 수채아파트 103동 1층상가 102호 (호암동 905)
165	대전청	2009-02-17	충청산업보건연구원(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창직로88번길 44 (모충동) (모충동 512-14)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166	대전청	2008-05-01	하나로산업보건연구소 (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포산로 137 (강서동) 2층
167	대전청	2007-06-01	주식회사한국환경안전 연구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3길 7-30 (남이면) (369-6번지)
168	대전청	2007-04-17	제이에스산업보건연구소 (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봉주로 64 5층 (제이에스메디칼빌딩) (443번지)
169	대전청	2006-12-08	(사) 대한산업보건협회 천안산업보건센터	충남 아산시 희망로46번길 46-8 3층(에버그린 빌딩) (배방읍 장재리 1802)
170	대전청	2005-11-07	명지안전보건연구소(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청당동) 선우법조타운 501호 (331번지 예산명지병원 산업보건센터 2층 작업환경측정실)
171	대전청	2004-06-15	국군의학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자운동 78-503)
172	대전청	2002-10-28	순천향대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신창면 읍내리 646-0)
173	대전청	2001-08-10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 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봉명동,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216-6번지)
174	대전청	2000-02-11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산16-5)
175	대전청	1998-11-16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씨엠아이의원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아트리움 B1 (둔산동)
176	대전청	1992-11-28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대전중앙병원) (285-3번지)
177	대전청	1991-07-01	(사단)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7
178	대전청	1985-10-01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복지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03 (문평동) (82-2번지)



**2022년 평가
세부추진 계획**

I. 2022년 평가 세부추진 계획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 실무위원회(1차)
 - (일 자) '22. 02. 25.(금)
 - (내 용)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심의·검토
- 평가 운영위원회(1차)
 - (일 자) '22. 03. 04.(금)
 - (내 용)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2 주요 일정 및 내용

- 평가 공고
 - (일 자) '22. 03. 11.(금)
 - (내 용) 평가기준,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
 - (방 법)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후 기관별 공문·편람 우편발송
- 평가 설명회 개최
 -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설명회를 지양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평가 설명 동영상 게시로 대체
 - 평가지표 관련 상담반을 운영하여 관련 문의사항 응대
 - ※ 상담반 : 본부(김효규 차장), 평가센터(배순덕 차장)
- 평가반 구성
 - 평가센터 직원(2명) 및 외부전문가*(1명)로 총 3인 1조로 구성
 - * 외부전문가 : 13명(한국산업보건학회 추천 등)
 - 직급 및 해당분야 평가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

□ 평가반 사전교육

- (대 상)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평가자(외부전문가 포함)
- (일 정) 3월 중(1~2일간)
- (내 용) 평가반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 설정 등

□ 평가실시

- (평가일정) 3월 ~ 6월
 - ※ 외부전문가 일정에 따라 8월까지 연장 가능
 - 평가전에 평가반장이 주관하여 기관별 연락 후 평가일정 확정
- (평가소요일) 기관별 1~2일 소요일
- (평가방법)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K2B)에 따라 5등급(S~D) 절대평가(1,000점 만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900점 이상	800 ~ 899점	700 ~ 799점	600 ~ 699점	600점미만

- 기관 방문 전 K2B에 등록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
- 방문평가지 대상기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 등 자료 제출 요구
 -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평가항목) 운영체계분야(400점) 및 업무성과분야(600점)로 구성

분야	평가항목		배점	문항수	분야	평가항목		배점	문항수
A 운영 체계	소 계		400	23	B 업무 성과	소 계		600	24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40	2		B.1	업무수행 충실성	170	6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인적기준)	180	9		B.2	측정결과 신뢰도	300	13
	A.3	시설·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180	8		B.3	신규 발굴율	50	1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80 ~ +10)	3		B.4	고객 만족도	40	1
	A.5	종합화	(+10)	1		B.5	결과표 송부율	40	1
						발굴 노력도	(+10)	1	
						자체평가보고서	(+10)	1	

※ ()는 가감점

□ 평가결과 통보

- (통보일자) 9월 중 평가기관별로 공문 통보(예정)
- (통보방법) 평가점수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공문으로 통보
 - 각 기관별 K2B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점수 확인

□ 이의신청 접수

- (일 정) 9월 중 평가기관별로 공문으로 이의신청 접수(예정)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접수
 - ※ 전국적 조직을 갖춘 기관의 경우 일괄 이의제기 불가
 - ※ 이의신청 기간 이외 신청 건에 대해서는 반려처리

□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 (재평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관 전수
 - ※ 이의제기 내용에 대하여 내부 검토(실무회의 등)하여 재평가(방문평가)여부 결정
 - 원칙적으로 최초 평가를 실시한 평가반에서 수행
 - ※ 최초 평가반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할 경우 변경가능
- (결과통보) 검토결과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기관 통보

□ 평가 실무/운영위원회(2차) 개최

- 평가 실무위원회(2차)
 - (일 자) 10월 중(예정)
 - (내 용)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사항 검토, 차기 평가 시 반영 필요 사항 검토 등
- 평가 운영위원회(2차)
 - (일 자) 10월 중(예정)
 - (내 용) 평가등급 검토 및 확정, 차기 평가 시 평가지표 개선사항 검토 및 확정 등

□ 최종 평가결과 보고, 공개 및 활용

○ (최종 평가결과 보고)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

- 공단은 종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보고

* 평가항목별·지역별·기관종류별 등 평가결과를 다각적·구체적 분석

○ (결과 공개) '23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 및공단 홈페이지 공표(예정)

-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 및공단 홈페이지 게재
- 평가제외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를 기재하고 명단 공개

○ (결과 활용) 평가결과 우수기관(S등급)은 점검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평가결과 불량기관(C~D등급)은 감독강화 및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배제(예정) 등



2022년 평가지표 개선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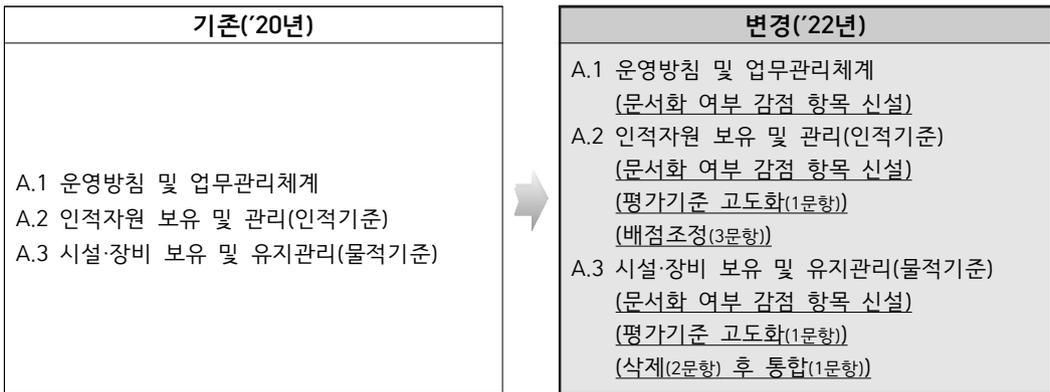
□ 평가항목 신규대비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문항수		'20년	'22년	
			'20년	'22년			
합 계			48	47	1,000	1,000	
A 운 영 체 계	소 계		25	23	400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	1	1	30	30
			1.2 업무관리체계	1	1	10	1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인적기준)	2.1 인적자원 보유	2	2	40	40
			2.2 관련분야 경력보유 수준	2	2	50	50
			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5	5	80	90 (+1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3.1 법정 시설 및 장비 적정 관리	2	2	40	40
			3.2 고성능 장비 보유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1	1	20	20
			3.3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	3	2	40	40
			3.4 실험용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 운영	2	2	40	40
			3.5 분석자 및 측정자용 보호구 구비 및 사용	1	-	10	- (-10)
			3.6 개인시료 포집기 정상 작동 여부	1	1	40	40
	가 감 점 항 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1	1	최대 +10	최대 +10
			4.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1	최대 -80	최대 -80
			4.3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1	최대 -20	최대 -20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1	1	최대 +10	최대 +10
	B 업 무 성 과	소 계		23	24	600	600
B.1		업무수행 충실성	1.1 측정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	3	3	80	70 (-10)
			1.2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검토의 적정성	1	1	20	20
			1.3 유기화합물 및 금속의 분석방법 숙련도	1	1	30	30
			1.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 자체 분석 여부	1	1	50	50
B.2		측정결과 신뢰도	2.1 측정계획서 및 종합의견 작성의 적정성	2	2	40	50 (+10)
			2.2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신뢰성 확보	1	1	30	30
			2.3 시료 채취 전·후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1	1	30	30
			2.4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1	1	30	30
			2.5 시료채취 시간, 개수의 준수 및 대장 작성	2	2	30	30
			2.6 분석실험의 적정 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	5	5	100	100
			2.7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1	1	30	30
B.3		신규사업장 발굴률	3.1 신규사업장 발굴률	1	1	50	50
B.4		고객 만족도	4.1 측정사업장 만족도	1	1	40	40
B.5		그 밖의 제반사항	5.1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송부 기한 준수 여부	1	1	40	40
			5.2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도	1	1	최대 +10	최대 +10
			5.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등록(신설)	-	1	-	최대 +10

1 운영체계(400점)

□ (주요 변경사항)

- 타분야(안전관리전문기관 등)와 평가체계 통일성 확보를 위한 「**문서화 여부**」 감점(최대 - 5점) 항목 신설
 - 적용항목 : A.1.1, A.1.2, A.2.3.1, A.3.1.1, A.3.1.2, A.3.3.1
- 평가기준 고도화
 - (A.2.1.1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등)의 평가기준 변경에 따라, 인적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로 **평가기준 세분화(4단계→5단계)**
 - (A.3.1.2 법정 필수장비에 관한 검·교정 실시) 평가대상 장비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의 교정 주기에 준하여 평가
- 배점 조정, 문항 삭제·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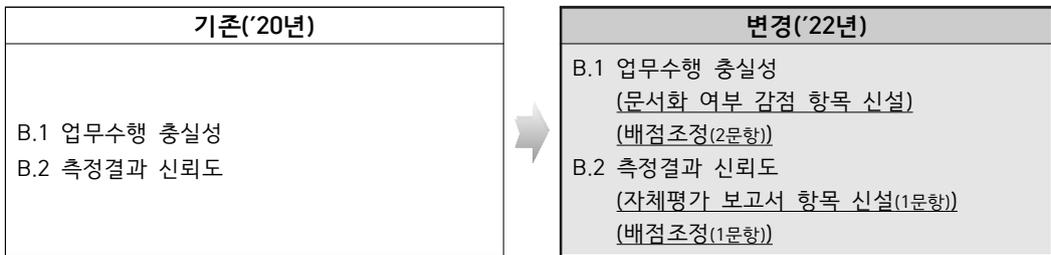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20년 문항	'20년 배점	'22년 배점	비고
A 운 영 체 계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인적기준)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A.2.3.1	20	30	배점상향
			A.2.3.3	20	10 (+10)	배점하향 및 가점추가
			A.2.3.5	10	20	배점상향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A.3.3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	A.3.3.1	20	30	통합 후 배점상향
			A.3.3.2	10	-	삭제 후 통합(A.3.3.1)
			A.3.5	10	-	삭제 후 통합(A.3.3.1)

2 업무성과(600점)

□ (주요 변경사항)

- 타분야(안전관리전문기관 등)와 평가체계 통일성 확보를 위한 문항 신설
 - 「문서화 여부」 감점(최대 - 5점) 항목 신설
 - 적용항목 : B.1.1.1, B.1.1.2
 - (B.5.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등록 가점(최대 +10점) 항목 신설
- 배점 조정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20년	'20년	'22년	비고
					문항	배점	배점	
B 업 무 성 과	B.1 업무수행 충실성	1.1	측정 및 분석결과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	B.1.1.1	20	30	배점상향	
				B.1.1.3	40	20	배점하향	
	B.2 측정결과 신뢰도	2.1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신뢰성 확보	B.2.1.1	20	30	배점상향	
	B.5 그 밖에 제반사항	5.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등록(신설)	-	-	+10	신설 (가점)	



2022년 평가지표

□ 평가항목 총괄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 점	
합 계			1,000	
A 운영 체 계	소 계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	30
			1.2 업무관리체계	1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인적기준)	2.1 인적자원 보유	40
			2.2 관련분야 경력보유 수준	50
			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90 (최대 +1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3.1 법정 시설 및 장비 적정 관리	40
			3.2 고성능 장비 보유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20
			3.3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	40
			3.4 실험용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 운영	40
			3.5 개인시료 포집기 정상 작동 여부	40
	가 감 점 항 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최대 +10
			4.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대 -80
			4.3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대 -20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최대 +10
B 업 무 성 과	소 계		600	
	B.1	업무수행 충실성	1.1 측정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	70
			1.2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검토의 적정성	20
			1.3 유기화합물 및 금속의 분석방법 숙련도	30
			1.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 자체 분석 여부	50
	B.2	측정결과 신뢰도	2.1 측정계획서 및 종합의견 작성의 적정성	50
			2.2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신뢰성 확보	30
			2.3 시료 채취 전·후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30
			2.4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30
			2.5 시료채취 시간, 개수의 준수 및 대장 작성	30
			2.6 분석실험의 적정 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	100
			2.7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30
	B.3	신규사업장 발굴율	3.1 신규사업장 발굴률	50
	B.4	고객 만족도	4.1 측정사업장 만족도	40
	B.5	그 밖의 제반사항	5.1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송부 기한 준수 여부	40
			5.2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도	최대 +10
			5.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등록(신설)	최대 +10

문서화 여부 평가 공통적용 사항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

- 문서화란 결재를 득한 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가 기입된 문서만 인정

평 가 기 준	감점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 및 문서상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및 결재를 득함	감점 없음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하나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또는 결재가 없음	-2점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를 하지 않고 문서상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또는 결재가 없음	-3점
㉣ 기록물관리기준이 없으며, 문서화 하지 않음	-5점

※ 국가 기록물 사무관리 지침에 따라 문서관리를 하는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하고, 기관 자체 문서관리 규정(지침)이 있을 시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지표 항목별 감점 적용결과 득점 점수가 해당항목 최저점수 이하인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
- 예) A23.1 항목 득점이 6점이고 문서화 점수가 -5점 감점인 경우, 해당 항목 최저점수인 “6”점으로 평가

해당 항목에서 특정한 언급이 없는 경우, 평가 산식에 따른 계산 값은 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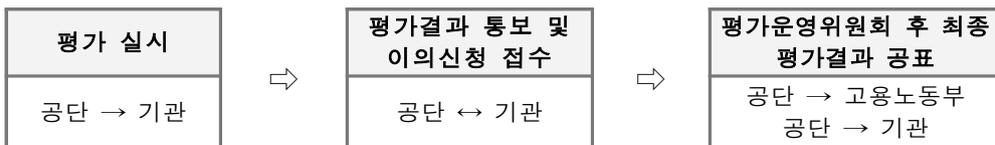
인력 적용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기간 내 1/2 이상 고용유지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

평가대상기간은 2020.1.1.~2021.12.31. 기준임

최종 평가결과 확정시기

- 이의신청 접수를 위해 통보된 평가점수는 최종 결과가 아님
- 최종 등급결정은 이의신청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평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평가결과 확정 및 공표】



최종 평가결과 운영체계(400점), 업무성과(600점) 중 가점을 득하더라도 만점을 넘을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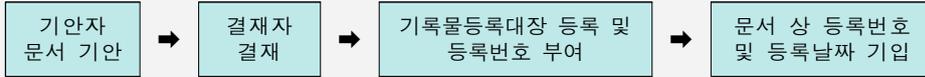
문서화 여부 평가 공통적용 사항

기록물등록대장 등록 및 문서상 표기방법

1. 기록물등록대장 문서 등록방법

① (생산문서) 결재자의 결재가 끝난 후 등록 및 (생산)등록번호 부여

※ 생산문서 : 외부 발송문서 및 내부결재 문서



② (접수문서) 접수와 동시에 등록 및 (접수)등록번호 부여 후 결재자 결재



2. 기록물등록대장 작성양식 및 방법

- ❖ 기록물등록대장 작성양식의 ①~⑧ 내용은 필수기입 사항임
- ❖ 필수기입 사항 외 기관 필요에 따라 내용 추가 가능

【기록물등록대장 작성양식】

등록 구분	생산(접수) 등록일자	생산(접수) 등록번호	제목	결재권자	기안자 (업무담당자)	수신자 (발신자)	기록물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록물등록대장 작성방법】

- ① 등록구분 : 생산 / 발송 / 접수 중 선택하여 기입
- ② 생산(접수)등록일자 : 생산 또는 접수 기록물의 등록 일자를 기입(예 : 2019. 1. 1.)
- ③ 생산(접수)등록번호 : 처리부서(기관)명(코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
- ④ 제목 : 해당 문서의 제목을 기입
- ⑤ 결재권자 : 결재권자 기입
- ⑥ 기안자(업무담당자) : (생산·발송문서) 기안자의 성명을, (접수문서) 업무담당자의 성명 기입
- ⑦ 수신자(발신자) : (생산 내부결재로 기입, (발송) 해당 문서 수신 기관 기입, (접수) 해당 문서 발송 기관 기입
- ⑧ 기록물철 : 해당 기록물이 편철되는 기록물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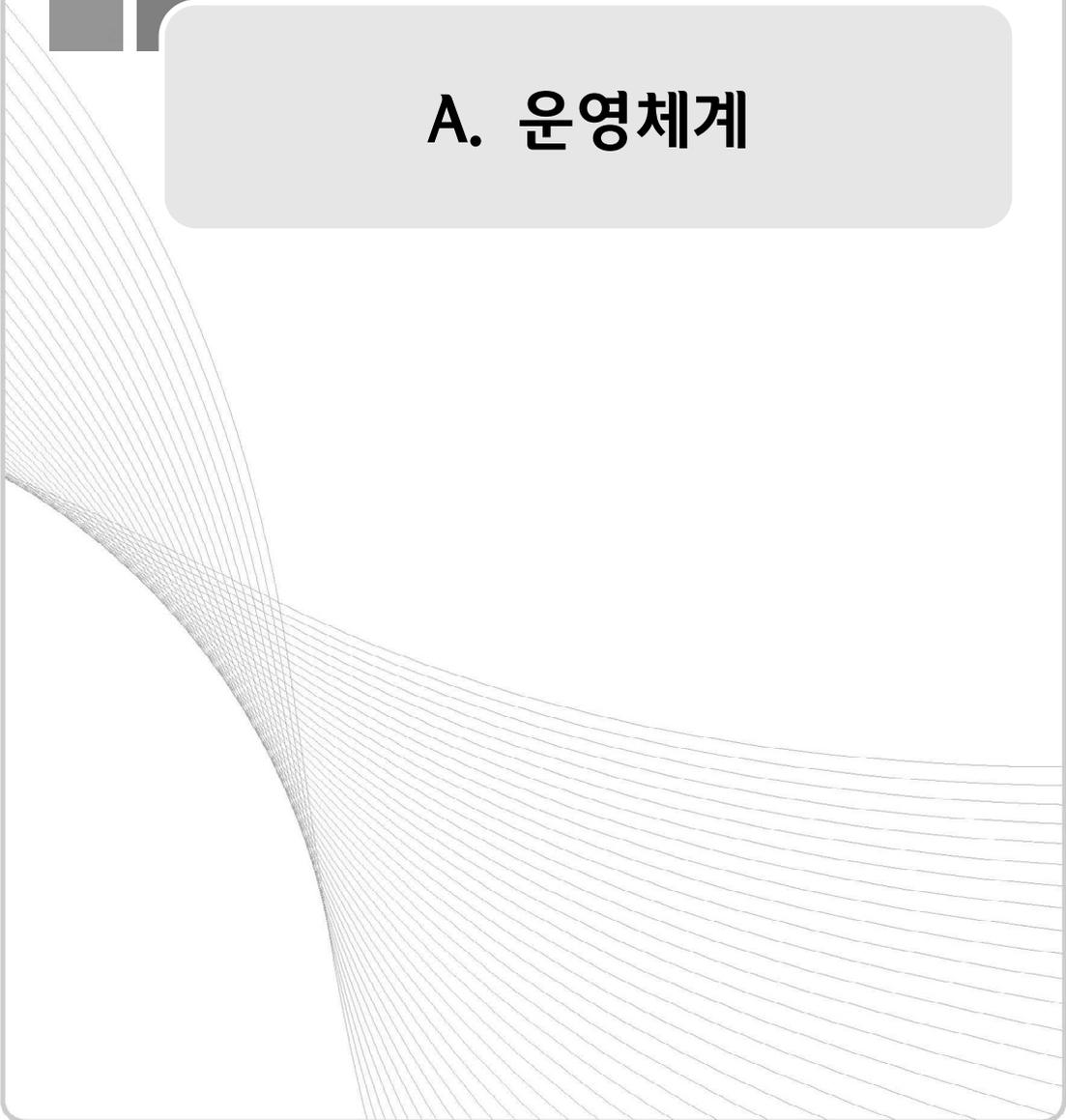
3. 접수인 활용

- ❖ 기관 기안문 양식에 등록번호, 등록날짜, 결재란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 그대로 사용
- ❖ 기관 기안문 양식에 등록번호, 등록날짜, 결재란이 없는 경우 “접수인”을 제작 활용

생산(접수)등록번호	○○○사업부(기관) - 001		
생산(접수)등록일자	20 . 1. 1.		
결 재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서명)	(서명)	(서명) (결재일자)



A. 운영체제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 (배점: 30)	
평가항목 A.1.1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	①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이 모두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이 1가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③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이 2가지 이상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④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0
	문서화 여부(감점: -5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평가취지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수준 향상 유도	
주요 착안사항	<p>○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운영방침 포함) 수립의 적정성 평가</p> <p>○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운영방침 포함)은 문서화하여야 함</p> <p>- 사업(업무)계획에는 최고 경영자의 ❶경영방침, 정책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와 사업목표 및 성과평가 등 사업(업무) 계획, ❷직원전문성 향상 방안, ❸인력별 운영계획, ❹장비운용 방안 등을 포함 작성하고, ❺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공표하여야 함</p>	
평가방법	<p>○ 적정성 평가 기준</p> <p>-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방침 포함)에 따라 모두 실행하는 경우 “30”</p> <p>-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방침 포함)이 1가지 누락된 경우 “20”</p> <p>- 연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였으나, 계획(방침 포함)이 2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 “10”</p> <p>-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0”</p> <p>※ 운영방침의 성과개선 여부를 평가한 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p> <p>○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의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p>	
증빙서류	○ 사업계획(방침 포함) 수립 및 실행 근거 문서	

A.1.2	업무관리체계 (배점: 10)	
평가항목 A.1.2	평가기준 (배점: 10)	평가결과
업무관리체계	①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작성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②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작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③ 조직도 또는 개인별 업무분장이 미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0
	문서화 여부(감점: -5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평가 취지		
○ 측정 및 분석 업무별 조직도 및 업무 분장을 통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		
주요 착안사항		
<p>○ 평가대상기간 중 측정기관 인력의 입·퇴사 및 기관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경우,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문서를 작성 기록·보존하여야 함</p> <p>○ 조직도에 따른 업무분장은 측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총괄책임자, 작업환경 측정의 계획·결과 평가에 관한 책임자(측정책임자), 분석(정도관리)책임자”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함</p>		
평가 방법		
<p>○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문서를 확인하여 적정성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10” -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총괄책임자, 측정책임자, 분석(정도관리)책임자가 조직도에서 구분이 힘들거나, 실제 업무 수행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조직도 또는 개인별 업무분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이동 이후 일정기간(1개월) 이내에 조정·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서, 인사기록부 또는 입·퇴사 관련 관리서류 등 확인) <p>○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의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p>		
증빙서류		
○ 조직도 및 업무분장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인적기준)

A.2.1	인적자원 보유 (배점: 40)	
평가항목 A.2.1.1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	①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8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20
	②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6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15
	③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4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10
	④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2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5
	⑤ 전문인력 추가확보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
평가취지	<p>○ 법정 보유 기준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문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하여 기관의 전문성 향상 유도</p>	
주요 착안사항	<p>○ 지정한계에 따른 인력기준 외의 추가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평가</p> <p>○ 법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추가로 지정된 채용 인력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및 근무 형태, 출근부, 업무일지 등을 중점 확인</p> <p>○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 기간의 1/2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확보 인력으로 적용 - 추가인력 중 이직자도 평가기간 내 1/2 이상 고용한 경우 평가에 반영 	
평가방법	<p>○ 추가된 전문인력 자격별 합산 점수 산출 방법</p> <p>① (기술사, 지도사) 6점/명 × 추가 인원수(명)</p> <p>② (기사, 분석사) 4점/명 × 추가 인원수(명)</p> <p>③ (산업기사) 2점/명 × 추가 인원수(명)</p> <p>⇒ ①~③의 합산점수 _____ 점</p>	
증빙서류	<p>○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p>	

A.2.1	인적자원 보유 (배점: 40)	
평가항목 A.2.1.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업무전문화 노력도 (업무전담 및 정규직화)	① 인력 중 정규직 현원의 합 : _____명 - 인력 : __명×2(기술사, 지도사) + __명×1(가중치) = _____명 ② 현원 인력기준 합 : _____명 - 인력 : _____명×2(기술사, 지도사) + _____명×1(가중치) = _____명 ⇒ (①÷②)×20점 = _____점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_____점 (최대 20점)
평 가 취 지		
○ 전체인력 중 정규직 인력 비율에 대한 평가로 업무전담 및 인력의 정규직화 노력 수준을 평가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예방활동 전개 유도		
주요 착안사항		
○ 인력기준 인원수 대비 정규직 현원 비율로 평가		
평 가 방 법		
○ 육아휴직 대체자는 육아휴직자로 평가 ○ 근무형태가 시간제, 기간제, 파트타임제 등인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평가 ○ 모든 인력(기술사, 지도사 등)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 ○ 기술사, 지도사는 가중치 2 부여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9] 인력기준표		
지정측정 사업장수	인력기준	비고
240개소 미만 (5인 이상 120개소 미만)	▫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기술사 1명 이상 ▫ 분석전담자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1명 이상	3명 이상
480개소 미만 (5인 이상 240개소 미만)	▫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기술사 1명 이상 ▫ 분석전담자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명 이상	5명 이상
720개소 미만 (5인 이상 360개소 미만)	▫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기술사 1명 이상 ▫ 분석전담자 2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3명 이상	7명 이상
720개소 이상 (5인 이상 360개소 이상)	▫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기술사 1명 이상 ▫ 분석전담자 2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3명 이상	60개소 추가될 때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1명 이상 추가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부 등		

A.2.2	관련분야 경력보유 수준 (배점: 50)	
평가항목 A.2.2.1	평가기준 (배점: 25)	평가결과
측정종사자 경력보유 수준	① 측정경력이 평균 10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25
	② 측정경력이 평균 5년 이상 ~ 1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5
	③ 측정경력이 평균 5년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5
평 가 취 지	<p>○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자의 작업환경측정 업무 경력을 평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측정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평가대상기간 내 종사한 모든 근로자(법정 인력)에 대해서 평가(이직자 포함)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측정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평가대상 기간의 1/2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p> <p>○ 작업환경측정 종사자의 측정업무경력이 해당 기관의 4대 보험 등 경력 관련 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p>	
평 가 방 법	<p>○ 해당 기관의 조직도 또는 업무분장 관련 서류를 통해 작업환경측정 업무담당자 지정 여부 (업무분장 및 조직관련 문서 등)를 확인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경력 산정에 반영(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가)</p> <p>○ 개인별 최대 경력인정 상한은 15년 예) 종사자 3명 중 1명은 30년, 2명은 1년 경력인 경우 : $(15년+1년+1년) / 3명 = 5.6년$ ※ 경력기간에 대한 산식은 반올림 미적용(소수점 버림)</p>	
증빙서류	<p>○ 측정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업무분장 관련 서류, 고용 및 경력 확인서류</p>	

A.2.2	관련분야 경력보유 수준 (배점: 50)	
평가항목 A.2.2.2	평가기준 (배점: 25)	평가결과
분석 종사자 경력보유 수준	① 분석경력이 10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25
	② 분석경력이 5년 ~ 1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5
	③ 분석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5
평 가 취 지	<p>○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자의 분석 업무 경력을 평가, 풍부한 경험에 따른 지식과 응용력을 가진 분석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분석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자의 업무경력은 4대 보험 등 경력 관련 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p>	
평 가 방 법	<p>○ 해당 기관의 조직도 또는 업무분장 관련 서류를 통해 분석담당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되 해당 서류는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p> <p>○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을 통하여 측정기관 종사 경력이 확인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가입 여부 외에도 경력증명서 등 분석업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경력산정에 반영(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가) <p>○ 평가대상기간 내 종사한 근로자 중 경력이 가장 오래된 분석자에 대해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분석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 <p style="text-align: center;">※ 평가대상 기간의 1/2이상 고용유지 분석자만 해당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 평가기간 중 가장 오래 근무한 분석자를 평가</p>	
증빙서류	<p>○ 분석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업무분장 관련 서류, 고용 및 경력 확인서류</p>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배점: 90, 가점: +10점)	
평가항목 A.2.3.1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측정· 분석인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이행 여부	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모든 인력이 이행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률이 60%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③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이행률이 60%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
	문서화 여부(감점: -5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평가취지	<p>○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여 측정 및 분석 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매년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교육·훈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함 * 교육·훈련 : 내부교육, 전문화교육, 세미나, 학술대회</p> <p>○ 매년 측정 및 분석인력 교육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 ※ 신규 입사자는 입사 3개월 이내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6개월 이내 실적이 확인되어야 함</p>	
평가방법	<p>○ 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문서화한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 ※ 매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p> <p>○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는 교육 이수증, 관련 문서 등을 확인하여 평가</p> <p>○ 수립된 개인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이행률을 평가 -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모든 인력이 교육훈련을 모두 이행한 경우 “30” -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개인별 평균 교육훈련을 60% 이상 이행한 경우 “18” -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개인별 평균 교육훈련을 60% 미만 이행한 경우 “6”</p> <p>○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의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p>	
증빙서류	<p>○ 교육·훈련 계획 관련 문서(교육 이수증)</p>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90, 가점: +10점)	
평가항목 A.2.3.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기관 소속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여부	① 모든 소속인력이 전문교육을 적정하게 이수	<input type="checkbox"/> 20
	② 일부 소속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	<input type="checkbox"/> 12
	③ 소속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	<input type="checkbox"/> 4
평 가 취 지		
○ 체계적인 전문교육 이수를 유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적정하게 이수하였는지 여부 평가		
평 가 방 법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 또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과 학회 전후에 실시하는 전문화(PDC)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전문화교육 인정범위(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p> <p>① 교육과정(일정)을 홈페이지, 신문광고,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p> <p>② 모든 작업환경측정기관 업무종사자가 교육신청이 가능</p> <p>③ 교육내용이 해당업무(작업환경측정)와 관련된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교육이수여부가 이수증이나 참가 확인증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p> <p>* 기관의 장이 동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내부직무교육은 전문교육 불인정</p> </div>		
○ 최소 인정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4시간 미만의 교육을 다수 이수한 경우 평가대상기간 내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평가(4시간을 1회로 평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전문화교육 제외대상</p> <p>①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이 매년 종사자 전체 혹은 직종·업무별로 수립한 내부직무교육</p> <p>② 법정 직무교육(보수교육 등)</p> <p>③ 학회·세미나 단순참석</p> </div>		
<p>○ 소속인력에 대한 전문화교육 이수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인력(개인별)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4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20" - 전체 전문교육 실시 횟수를 전체 소속인력 인원수로 나누어 평균 1회 이상인 경우 "12" - 전체 전문교육 실시 횟수를 전체 소속인력 인원수로 나누어 평균 1회 미만인 경우 "4" <p>※ 평가 대상기간 중 이수한 전문교육에 대하여 평가하며, 신규 입사자 또는 이직자가 입사 전·후 이수한 교육이 평가 대상기간에 해당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p> <p>※ 평가대상기간 내 신규입사자가 입사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없을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산업보건관련 교육으로 제한)</p> <p>※ 코로나19 확산으로 평가기간 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이수증 확인 필요)</p>		
증빙서류		
○ 교육 이수증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90, 가점: +10점)		
평가항목 A.2.3.3	평가기준 (배점: 10, 가점: +10)	평가결과	가점
기관장을 포함한 측정 및 분석인력의 전문성 향상활동	①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참석이 10점인 경우	□ 10	□ +10
	②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참석이 8점인 경우	□ 8	□ +5
	③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참석이 6점인 경우	□ 6	□ +2
	④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참석이 2점인 경우	□ 2	□ 0
평가 취지	○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자들(기관장 포함)의 산업보건(측정·분석) 관련 세미나·학술대회 참석 및 학습조직 운영을 유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p>(세미나·학술대회 참석) [배점 10점]</p> <p>○ 평가대상기간 내 기관장을 포함한 소속인력이 매년 1회 이상 산업보건분야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실적을 평가</p> <p>(자체 세미나 개최 또는 학습조직 운영) [가점 10점] ('24년 평가 시 삭제 예정)</p> <p>○ 평가대상기간 내 매년 2회 이상 기관 자체 세미나 개최 또는 학습조직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p> <p>※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p>		
평가 방법	<p>○ 세미나·학술대회 참석 실적(배점)과 자체 세미나 개최·학습조직 운영실적(가점)을 각각 평가한 후 전체 득점으로 평가 (최종 평가결과 _____ 점)</p> <p>[배점] (세미나·학술대회 참석) _____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인력의 60% 이상이 매년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10” - 소속인력의 2년 평균이 60% 이상 참석한 경우 “8” - 소속인력의 30% 이상 60% 미만이 매년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6” - 소속인력의 30% 미만이 매년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2” <p>※ 세미나, 학술대회 주관기관의 직인이 있는 참석확인증만 인정(학회 연회비등의 세금계산서는 불인정)</p> <p>※ 평가대상기간 중 학술대회에 참여 후 퇴사한 인력도 종사인력에 포함하여 평가</p> <p>[가점] (자체 세미나 개최 및 학습조직 운영) _____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세미나 및 학습조직을 매년 2회 이상 운영한 경우 “10” - 자체세미나 및 학습조직을 매년 1회 이상 운영한 경우 “5” - 자체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매년 1회 이상 운영한 경우 “2” - 자체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의 운영 실적이 없거나, 문서화 되지 않은 경우 “0” <p>※ 계획문서, 사진, 참석자 서명, 회의자료, 결과보고서 등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고 참여인원 80% 이상인 경우 인정('20년 예고사항)</p>		
증빙서류	○ 세미나, 학술대회 참석확인증, 학습조직 운영관련 문서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90, 가점: +10점)	
평가항목 A.2.3.4	평가기준 (배점: 10)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여부	①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②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
평가취지	<p>○ 소속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측정 및 분석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지도요원의 능력개발 관련 내부규정은 “문서화” 되어있어야 하며, 연간사업계획 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p> <p>○ 업무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 학위 수료(졸업), 대학의 강의 활동 지원, 외국어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등을 위한 기관장의 시간배려 또는 금전적 지원 실적을 평가</p>	
평가방법	<p>○ 평가대상기간 중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 - 1건 이상 “10” , 0건 “0”</p> <p>○ ‘문서화’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지원이 없는 것으로 평가 예시 시간적배려: 유급휴가, 유연근무제 시행 관련 문서 또는 서류 금전적지원: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예산 집행 문서 또는 서류(예> 학원수강비, 응시료) ※ 도서구입은 실적에서 제외</p>	
증빙서류	<p>○ 지원 실적 관련 서류</p>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90, 가점: +10점)	
평가항목 A.2.3.5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자기계발, 연구 실적	① 자기계발 및 연구 실적이 모두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자기계발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자기계발 및 연구 실적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취지	<p>○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자들의 상위학위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연구 실적물의 학회지 및 학술대회 연재집 게재를 유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자기계발)</p> <p>○ 평가대상 기간 중 측정·분석 인력이 상위학위를 취득(과정 입학 포함)하거나 업무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말함</p> <p>-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포함</p> <p>(연구실적)</p> <p>○ 산업보건관련 국내·국외 학회 또는 학술대회 등을 통한 측정기관 인력의 연구 실적물</p> <p>- 업무관련으로 안전보건전문지에 게재한 실적 포함</p>	
평가 방법	<p>○ 평가대상기간 중 측정 또는 분석 인력이 상위학위(과정 입학 포함) 및 업무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였거나 학회지, 학술대회 연재집, 안전보건 전문지 등에 연구실적물을 게재한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p> <p>- 자기계발 및 연구실적이 모두 있는 경우 "20" (동일인인 경우에도 인정)</p> <p>- 자기계발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12"</p> <p>- 자기계발 및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 "4"</p>	
증빙서류	<p>○ 상위학위 및 국가자격 취득 서류 사본, 연구실적물 사본(저자확인이 가능한 경우)</p>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관리)

A.3.1	법정 시설 및 장비 적정 관리 (배점: 40)	
평가항목 A.3.1.1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법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정 관리 여부	① 시설·장비 유지관리지침이 적정하고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시설·장비 유지관리지침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가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시설·장비 유지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문서화 여부(감점: -5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평가 취지		
○ 법정 시설·장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p>○ 측정 및 분석 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적정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정하는 ①장비에 대한 최신화 목록, ②장비대장 작성·관리, ③장비 유지관리지침이 문서화되어 작성·관리 ※ 장비대장은 장비별(S/N), 용도, 구입, 수리 및 점검일자에 대하여 기록·관리 ※ 장비 유지관리지침에는 관리(운용)책임자 지정, 관리조직, 구입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 및 관리, 검·교정 대상장비 및 검·교정주기, 불용결정, 손망실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함 ※ 담당직원(장비담당자)에 대하여 동 지침 내용(③)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등 면담결과에 따라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한 단계 하향 평가 		
평가 방법		
<p>○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의 보유 및 대장 작성·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유지관리지침, 장비 목록 및 대장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되는 경우 “20” - 장비 유지관리지침, 장비 목록 및 대장 유지·관리가 1가지 미흡한 경우 “12” - 장비 유지관리지침, 장비 목록 및 대장 유지·관리가 2가지 이상 미흡한 경우 “4” <p>○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의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p>		
증빙 서류		
○ 장비대장, 장비 유지관리지침		

A.3.1	법정 시설 및 장비 적정 관리 (배점: 40)	
평가항목 A.3.1.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실시	① 모든 법정 필수 검·교정 대상 장비에 대한 검·교정 계획 수립과 이행이 적정한 경우	□ 20
	② 검·교정계획이 일부 미흡하거나, 일부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1건이 누락된 경우	□ 12
	③ 검·교정 계획 미수립, 또는 검·교정 누락이 2건 이상인 경우	□ 4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 취지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한 검·교정 계획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장비유지관리지침에 따른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대상 장비 : ¹ 유량계(공기시료채취기 보정기), ² 표준소음발생기(누적소음노출량계 보정기), ³ 열선풍속계(대기의 온도·습도·기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포함), ⁴ 전자저울, ⁵ WBGT(흑구 온·습도계), ⁶ 산소(가스)농도측정기, ⁷ 조도계, ⁸ 자동피펫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간 내의 검·교정 계획 수립 및 이행 적정여부를 확인 - 검·교정 계획에는 검·교정 대상 장비 목록, 주기, 의뢰기관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화 되어야 함 - 검·교정 주기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교정주기에 준하여 평가('20년 예고 사항) ※ (12개월) 전자저울, WBGT, 자동피펫 ※ (24개월) 산소(가스)농도측정기, 유량계, 소음측정기 및 보정기, 열선풍속계, 조도계 - 검·교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검·교정을 모두 실시한 경우 "20" - 검·교정 계획수립이 일부 미흡하거나, 검·교정 1건이 누락된 경우 "12" - 검·교정 계획 미수립, 또는 검·교정 누락이 2건 이상인 경우 "4" ※ 검·교정 성적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장비의 검·교정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중량분석에 사용하는 전자저울의 무진동테이블 설치여부 확인(미설치 시 한 단계 하향 평가) ○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의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		
증빙서류		
○ 검·교정계획이 수립 근거 문서, 검·교정 성적서		

A.3.2	고성능 장비 보유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배점: 20)	
평가항목 A.3.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고성능 장비 보유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① 고성능 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장비가 적절히 유지·관리	<input type="checkbox"/> 20
	② 고성능 장비를 보유 하였으나, 해당 장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10
	③ 고성능장비의 보유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0
평가 취지	<p>○ 고성능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유지·관리 적정여부 확인을 통해 유기화합물, 산·알칼리, 이소시아네이트류 화합물 등에 대한 측정결과 정확도 및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향상을 위해 고성능장비* 보유여부 및 장비 유지·관리상태 적정성 여부를 평가</p> <p>* 유도결합플라즈마(ICP),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GC-mass, X-ray 회절분석기, 적외선분광분석기,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p>	
평가 방법	<p>○ 고성능 장비의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능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장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는 경우 “20” - 고성능장비를 보유 하였으나, 해당 장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 “10” - 고성능장비의 보유가 없는 경우 “0” <p>※ 장비의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p> <p>○ 유지관리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A.3.1.1을 준용한다.</p> <p>※ (A.3.1.1) 항목의 “문서화 여부” 평가 결과 장비 유지관리지침 분야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 “10”</p> <p>○ 특수건강진단 등 타부서 장비 공용사용 및 단기 리스사용 적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부서에서 보유한 장비 공용사용 불인정 및 2년 미만 리스사용 불인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ICP</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HPLC</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GC/MS</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X-회절분석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적외선분광분석기 (FTIR)</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IC</p> </div> </div>		
증빙서류	<p>○ 고성능장비의 보유 및 유지·관리 근거 서류</p>	

A.3.3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 (배점: 40)	
평가항목 A.3.3.1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 여부	①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이 있고,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함	□ 30
	②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부 누락됨	□ 18
	③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에 따른 조치가 미흡함	□ 6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 취지		
○ 측정과 관련된 실험(분석)실 등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지침을 문서화하고, 그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토록하여 실험실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KOSHA Guide(G-82-2018)		
주요 착안사항		
<p>○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지침내용에 따른 점검 적정성 여부 평가</p> <p>- 안전보건지침은 보유 실험실의 현황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p> <p>① 화학물질의 누출이나 전기설비의 누전 등 사고 시 행동요령</p> <p>②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장치 설치</p> <p>③ 분석용 유해물질의 배기 또는 배액처리(설비구비 또는 <u>위탁처리</u>*여부)</p> <p>④ 비상용 샤워기와 세안설비(적정설치 및 상시가동여부)</p> <p>⑤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용기별 전도방지조치의 적정성)</p> <p>⑥ 실험실내 착용 가능한 전용 보호용구의 구비</p> <p>- 실험실 안전보건 점검 시 지침적용의 적정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u>위탁처리를 위한 배액(폐액) 수거통은 유기용제용, 중금속용, 산/알칼리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인정</u></p>		
평가 방법		
<p>○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지침내용에 따른 <u>정기적*</u> 점검의 적정성 여부 확인</p> <p>- 안전보건지침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짐 “30”</p> <p>- 안전보건지침이 내용에 따른 조치가 1가지 미흡한 경우 “18”</p> <p>※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침이 실험실 현황과 상이할 경우도 포함</p> <p>- 안전보건지침에 따른 조치가 2가지 이상 미흡한 경우 “6”</p> <p>* <u>“정기적”이란 월 1회 이상이 기준이며, 지침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을 인정한다. 다만, 지침의 점검주기가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u></p> <p>※ 담당직원(분석사)에 대하여 동 내용(①~⑥)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등 면담결과에 따라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한 단계 하향 평가</p> <p>※ 경고표지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이 부적정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p> <p>○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의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p>		
증빙서류		
○ 안전보건지침, 실험실 안전보건 점검결과 문서		

A.3.3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 (배점: 40)	
평가항목 A.3.3.2	평가기준 (배점: 10)	평가결과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① 후드가 설치되고 적정하게 배기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② 후드는 있으나 배기상태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③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
평 가 취 지	<p>○ 분석 장비별로 국소배기장치 설치(후드) 여부, 해당 유해인자별 제어풍속을 확인하여 실험실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분석 장비별로 실험실용 후드가 설치되어야 하며, 분석실 내부 흡후드의 제어풍속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제어풍속: 0.4 m/s)</p>	
평 가 방 법	<p>○ 원자흡광분광기(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ICP)의 후드, 실험실용 흡후드 설치 및 적정 제어풍속 유지 여부를 확인(제어풍속 유지 여부는 흡후드에 대해서만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흡후드의 제어풍속이 적정한 경우 “10” - 후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흡후드의 제어풍속이 부적정한 경우 “5” - 후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p>○ 흡후드의 제어풍속은 흡후드의 슬라이드를 평소에 작업하는 위치에 놓고 측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열선풍속계를 활용하여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를 높이 30 cm 높이로 개방해서 평균 제어풍속 측정 <p>○ 흡후드 내 필터 미사용 또는 교체 주기 미흡 시 한 단계 하향</p> <p><참고사항></p> <p>○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의 후드 설치 여부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설치토록 권고</p>	
증빙서류	<p>○ 제어풍속 측정결과, 필터 구매확인 서류(세금계산서 등), 필터 교체주기 확인 등</p>	

A.3.4	실험실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 운영 (배점: 40)	
평가항목 A.3.4.1	평가기준 (배점: 25)	평가결과
실험용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운영	① 실험용 시약 보관 설비를 사용하고 국소배기 및 자체정화설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시료보관 설비에 시료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5
	② 실험용 시약 보관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소배기 및 자체정화설비가 미사용 상태이며, 시료보관 설비에 시료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5
	③ 실험용 시약 보관 설비가 미사용 상태이며, 시료보관 설비에 시료 이외의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
평가취지	<p>○ 실험용 시약을 적정하게 보관하여 시약 누출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측정시료만 별도 보관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분석용 시약은 별도의 보관설비가 있어야 하며, 실험용 시약보관 장소에는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함</p> <p>○ 시료보관설비(냉장고 등)에는 시료 이외의 시약, 음료, 음식물 등이 보관되지 않아야 함</p>	
평가방법	<p>○ 분석용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성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용 시약을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약장에 보관하고 있고, 시료보관 설비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 “25” -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이 없거나,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15” - 실험용 시약을 별도로 보관하는 설비가 없으며, 시료보관 설비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0” <p>※ 필터를 제조사의 교체주기(예: 1년에 1회 이상)내 교체하지 않거나, 분석시약 보관상태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지난 시료(표준시약) 보관이 확인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p>	
증빙서류	<p>○ 관련사진</p>	

A.3.4	실험실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 운영 (배점: 40)	
평가항목 A.3.4.2	평가기준 (배점: 15)	평가결과
시약·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적정성과 해당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보 여부	① 시약 및 물품의 구매대장이 적정하게 작성되고, 해당시약의 MSDS 자료 보유가 적정한 경우	□ 15
	② 시약 및 물품의 구매대장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해당시약의 MSDS 자료의 내용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9
	③ 시약 및 물품의 구매대장이 없거나, 시약의 MSDS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3
평가 취지	<p>○ 시약 및 물품의 선정·구매·보관 절차를 규정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시약의 MSDS 자료를 확인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p>	
주요 착안사항	<p>○ 시약·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대장(전자파일 포함)등이 작성·관리되어야 하며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유하여야 함(전산화된 경우도 인정)</p> <p>○ 시약·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u>전자파일</u> 및 대장의 작성여부 확인</p> <p>* 구매에 대한 결재가 확인되는 파일</p>	
평가 방법	<p>○ 시약 5종을 무작위 선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여부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작위 선정된 시약 5종의 MSDS자료가 모두 최신화 되어 있고, 해당 시약에 대한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전자파일 및 관련내용이 모두 확인되고 관리되고 있는 경우 “15” - 무작위 선정된 시약 5종 중 1종 이상의 MSDS자료가 최신화 되어있지 않거나, 해당 시약에 대한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작성이 <u>미흡</u>한 경우 “9” <p>* 대장은 있으나 작성이 일부 누락 및 불일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작위 선정된 시약 5종 중 1종 이상의 MSDS자료가 없거나 3종 이상이 최신화 되지 않은 경우, 해당시약에 대한 대장이 없는 경우 또는 대장은 있으나 모두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p>※ 외국어로 된 MSDS는 불인정</p>	
증빙서류	<p>○ 관련 근거 MSDS 및 관리대장</p>	

A.3.5	개인시료 포집기 정상 작동 여부 (배점: 40)								
평가항목 A.3.5	평가기준 (배점: 40)							평가결과	
개인시료 포집기 정상 작동 여부	① 대상 장비 전부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 40 □ 24 □ 8	
	② 대상 장비 80% 이상이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③ 대상 장비 80% 미만이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평가취지	○ 개인시료 포집기(sampling pump)의 성능평가를 통해 작업환경측정 시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착안사항	<p>○ 입자상물질 : 최대 압력부하 범위(또는 이하)에서 유량을 2.5 L/분(2.3 - 2.7 L/분)으로 조절한 후, 4시간 동안 가동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p> <p>○ 가스상물질 : 최대 압력부하 범위(또는 이하)에서 유량을 0.2 L/분(0.18 - 0.22 L/분)으로 조절한 후, 4시간 동안 가동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p> <p>※ 4시간 이내 펌프가 꺼지거나, 유량변동이 초기 설정 값의 ±5%(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읽는다)를 초과하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p>								
평가방법	<p>○ 측정 장비 전체 보유 대수 중 입자상 물질용 5대, 가스상 물질용 5대를 무작위 선정하여 장비의 성능을 평가</p> <p>- 입자상 물질 : 3단 카세트에 패드와 공극 0.8μm MCE 여과지 3장을 넣어 평가함</p> <p>- 가스상 물질 : 실리카겔(400mg/200mg) 1개와 활성탄관 튜브(100mg/50mg) 2개를 직렬 연결하여 평가</p> <p>* 평가 전일에 모든 측정 장비를 완전충전 하도록 함</p> <p>* 선정된 측정 장비에 평가 매체를 장착하고 5분간 가동시킨 후, 평가 대상기관 담당자가 유량을 조절하게 함</p> <p>* 2시간 간격으로 유량을 측정</p>								
증빙서류	○ 유량측정 자료								
펌프 번호	유량 (1차)	유량 (2차)	유량 (3차)	정상여부 (○, ×)	펌프 번호	유량 (1차)	유량 (2차)	유량 (3차)	정상여부 (○, ×)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가감점 항목)

A.4.1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가점: 최대 +10)	
평가항목 A.4.1	평가기준 (가점: 최대 +10)	평가결과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① 대통령상 : _____ 건 × 5점 = _____ 점 ② 국무총리상 : _____ 건 × 4점 = _____ 점 ③ 고용노동부 장관상 : _____ 건 × 3점 = _____ 점 ④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 _____ 건 × 2점 = _____ 점 ⑤ 민간단체장상 : _____ 건 × 1점 = _____ 점 ⇒ 총점: ①+②+③+④+⑤ = _____ 점(최대 +10점)	_____ 점
평가취지	○ 산업보건 분야 유관기관 및 소속 직원 발굴을 통한 사기 진작 및 대외 공신력 확보 유도	
주요 착안사항	○ 평가기간 내 산업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민간단체장” 으로부터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을 평가	
평가방법	○ 평가기간 내 평가 기관 또는 소속직원이 산업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민간단체장*” 으로부터 포상실적을 관련 상장 또는 상패 등으로 확인하여 실적 평가 * 민간단체는 측정 및 분석 관련학회로 한정함 예> (사)한국산업보건학회, (사)대한직업환경의학회, (사)한국분석과학회 - 평가기간 내 근무하는 동안 포상한 실적에 한함(보유인력 중 포상자가 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포상을 받을 당시 소속기관에 한하여만 실적 인정)	
증빙서류	○ 상패 등 포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사본	

A.4.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최대 -80)	
평가항목 A.4.2	평가기준 (감점: 최대 - 80)	평가결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___개월 × (- 15점) = ___점 ⇒ 총점 : _____점(최대 - 80점)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_____ 점
평가취지		
○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감점 평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유도		
주요 착안사항		
○ 평가대상기간 중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 평가 ○ 정도관리 불합격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나 관할 지청으로부터 처분받지 않은 경우 감점 “-15점” 부여		
평가방법		
○ 업무정지 처분 개월 수 당 15점 감점, 최대 80점 감점 - 처분 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적용 ※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예시) 업무정지 3.5개월 × -15점 = - 52.5점 → -53점		
증빙서류		
○ 처분 관련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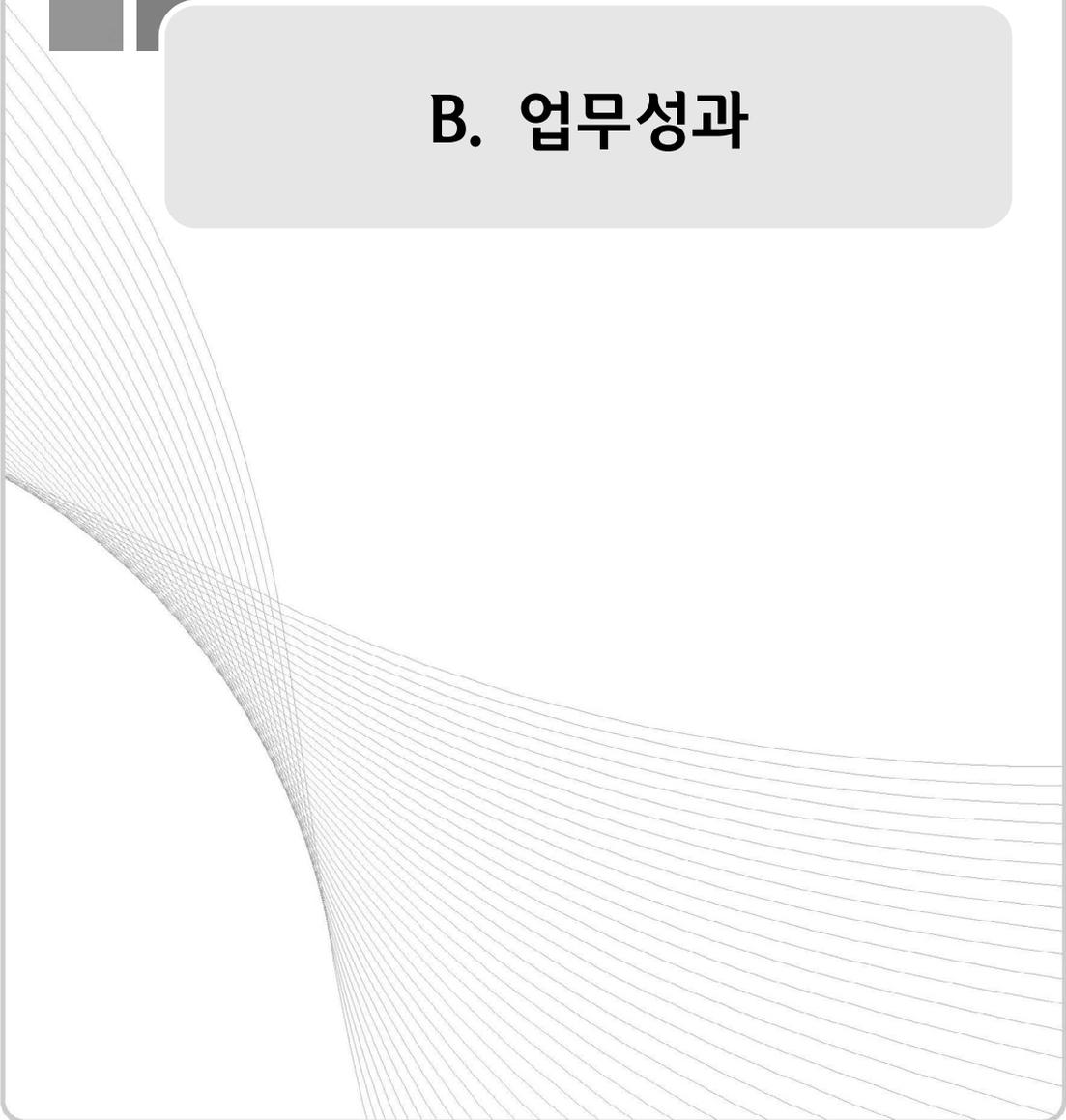
A.4.3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최대 -20)	
평가항목 A.4.3	평가기준 (감점: 최대 -20)	평가결과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경고 처분 ____건 × (-2점) = ____점 ⇒ 총점 : ____점(최대 -20점)	____ 점
평가취지		
	○ 시정조치·경고 처분에 대한 감점 평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유도	
주요 착안사항		
	○ 평가대상기간 중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 평가	
평가방법		
	○ 시정조치·경고 처분에 대한 평가는 -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수 당 2점 감점, 최대 20점 감점	
증빙서류		
	○ 시정 조치 관련 공문	

A.5 종합화(가점 항목)

A.5.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가점: 최대 +10)	
평가항목 A.5.1	평가기준 (가점: 최대 +10)	평가결과
종합기술지원 (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협약 기관간 교류실적 : ____ 건 × 1점 = ____ 점 ⇒ 총점: ____ 점(최대 +10점)	____ 점
평가취지	○ 수탁 사업장 업무상질병 예방 활동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기관의 제한된 기술력 극복 등 상호보완 노력 유도	
주요 착안사항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역할 수행 극대화를 위해 <u>산업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¹⁾</u> 과 컨소시엄(협약 등) 구성을 통해 사후관리조치 및 작업환경개선 등 종합기술지원 실적을 평가 <u>1)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등</u>	
평가방법	○ 평가기간 내 컨소시엄(협약) 체결기관과의 교류실적 건수 반영 - 컨소시엄(협약)기관 간 교류실적은 구두 교류가 아닌 상호 업무 협조를 증명하는 공문이나 협약서 작성 후 시행하며 시행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사진,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 - 단, <u>동일사업자¹⁾</u> 인 기관과 연계할 경우 평가점수의 1/2(50%) 반영 ¹⁾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 예시1) 작업환경측정결과 환기장치의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환기설비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협약 등) 구성 및 활동 ※ 예시2) 근로자 건강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 ※ 예시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개선, 작업특성을 고려한 신체부위별 스트레칭 제시, 개인별 운동처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 ※ 예시4)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50% 이상 포함)공정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 ※ 예시5)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보건관리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 등	
증빙서류	○ 관련 근거 문서	



B. 업무성과



B.1 업무수행 충실성

B.1.1	측정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 (배점: 70)	
평가항목 B.1.1.1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 보유 및 적용여부	① 모든 유해인자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이 매뉴얼과 동일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일부 유해인자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하고있거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③ 유해인자 매뉴얼이 누락되었거나, 시료채취대장, 분석대장 내용이 2개 이상 상이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문서화 여부(감점: -5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평가 취지	<p>○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기관 자체의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매뉴얼을 보유·적용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적용범위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p> <p>○ 유해인자별로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자체 매뉴얼 보유여부 평가</p> <p>- 자체 매뉴얼의 작성기준에 대한 기본방침은 KOSHA GUIDE를 포함하여 각 기관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화”되어 관리되어야 함</p>	
평가 방법	<p>○ 자체 매뉴얼 보유 및 적용의 적정성을 평가</p> <p>-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은 측정사업장 5개소를 무작위 선정하여 현장에 적용한 방법과 매뉴얼상의 방법을 비교 평가</p> <p>- 자체 매뉴얼은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로 보유하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p> <p>* 전자문서는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거나, 하이퍼링크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p> <p>단, 하이퍼링크가 해당기관(KOSHA, OSHA, NIOSH, HSE 등)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은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p> <p>- 유해인자 매뉴얼이 1가지 누락되었거나, 시료채취대장이나 분석대장의 내용과 매뉴얼이 상이한 경우 “18”</p> <p>- 유해인자 매뉴얼이 2가지 이상 누락되었거나, 시료채취대장이나 분석대장의 내용과 매뉴얼이 2개 이상 상이한 경우 “6”</p> <p>※ 매뉴얼이 최신성(update)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p> <p>○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의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p>	
증빙서류	<p>○ 매뉴얼, 시료채취대장 또는 분석대장</p>	

B.1.1	측정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 (배점: 70)	
평가항목 B.1.1.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분석 정도관리 내부규정 수립 및 시행 여부	①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행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4
	문서화 여부(감점: -5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평가 취지	<p>○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분석정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유도하여 분석결과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측정기관 자체 분석정도관리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내부 규정에는 운영체계, 관리책임자 지정, 정도관리 절차 및 결과처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p>	
평가 방법	<p>○ 분석에 대한 정도관리 내부규정이 적정하게 수립·시행되는 경우 “20”</p> <p>- 내부규정에 명시된 내용으로 실행이 확인되면 인정</p> <p>○ 정도관리 내부규정의 실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실행된 경우 “12”</p> <p>- 내부정도관리 실시주기,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 등</p> <p>○ 정도관리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4”</p> <p>- 공단의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정도관리 실시주기 등이 명시되지 않아 내부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내부규정이 없는 것으로 평가</p> <p>○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의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p>	
증빙서류	<p>○ 분석 정도관리 내부규정 관련 문서,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실행 확인 자료</p>	

B.1.1	측정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 (배점: 70)	
평가항목 B.1.1.3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정도관리 결과	① 평가기간 내 부적합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평가기간 내 1회 부적합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5
	③ 평가기간 내 2회 부적합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④ 평가기간 내 3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평가취지	<p>○ 작업환경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여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p> <p>- 정기정도관리 항목은 분석자의 능력, 특별정도관리 항목은 분석장비·설비, 분석 준비현황, 분석자의 분석능력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함</p>	
주요 착안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고시 제2020-44호 제56조(정도관리의 구분 및 실시시기)</p> <p>① 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와 특별정도관리로 구분한다.</p> <p>1. 정기정도관리는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도관리로서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기본분야 : 기본적인 유기화합물과 금속류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p> <p>나. 자율분야 : 특수한 유해인자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p> <p>2. 특별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p> <p>나. 직전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불합격한 경우</p> <p>다.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평가방법	<p>○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하여 평가</p> <p>○ 평가기준</p> <p>-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가 모두 적정한 경우 “20”</p> <p>-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가 1회 부적합한 경우 “15”</p> <p>-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가 2회 부적합한 경우 “10”</p> <p>-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가 3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 “5”</p>	
증빙서류	<p>○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결과서</p>	

B.1.2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검토의 적정성 (배점: 20)	
평가항목 B.1.2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검토의 적정여부	①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적정한 경우	□ 20
	②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일부 미흡한 경우	□ 12
	③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	□ 4
평가 취지	<p>○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및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결과 보고서의 신뢰성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결과표의 문서 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단계별 검토(결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최종승인자의 확인일자 기록 필수)</p> <p>- 문서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는 해당기간의 업무분장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업무분장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검토(승인)절차가 없는 것으로 평가</p>	
평가 방법	<p>○ 결과표 5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문서 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의 명확한 구분 및 단계별 확인(결재) 여부를 평가(단, 소음만 측정하는 사업장의 보고서는 제외한다)</p> <p>- 무작위 추출한 결과표 5개 모두가 검토(승인)자의 확인(일자 포함), 분석자 확인이 있는 경우 "20"</p> <p>- 일부 결과표가 검토(승인)자의 확인(일자 포함)은 있으나 분석자 확인이 없는 경우 "12"</p> <p>- 일부라도 검토(승인)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4"</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측정결과표 사본</p>	

B.1.3	유기화합물 및 금속의 분석방법 숙련도 (배점: 30)	
평가항목 B.1.3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유기화합물 및 금속의 분석방법 숙련도	① 분석방법과 분석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분석방법과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③ 분석방법과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평가취지		
○ 측정대상 유해인자(유기화합물·금속)의 분석방법,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작업환경측정대상(유기화합물/금속) 유해인자의 분석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석기기의 구성, 분석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평가방법		
○ 분석기기(GC 또는 GC-MS, AAS 또는 ICP)의 이해도 평가 - 분석기기의 기본 원리와 주요 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 ○ 분석방법의 이해도를 평가 - 유기화합물·금속 물질 중 임의로 화학물질 4종(유기화합물 2종, 금속 2종)을 제시하여 분석자의 분석과정 및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 평가기준 - 유기화합물 및 금속 각각에 대해 제시한 2가지 물질 모두에 대해 분석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고, 분석기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 “30” - 유기화합물 및 금속 각각에 대해 제시한 2가지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분석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분석기기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경우 “18” - 유기화합물 및 금속 각각에 대해 제시한 2가지 물질 모두 분석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분석기기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한 경우 “6” ※ 면담대상자 :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 신고인력		
증빙서류		
○ 구술 평가내용이 미흡한 근거		

B.1.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화학적인자) 자체 분석 여부 (배점: 50)	
평가항목 B.1.4	평가기준 (배점: 50)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인자) 자체 분석 여부	① 화학적인자 시료 및 결과 관리가 적정(자체분석률 90% 이상)한 경우	□ 50
	② 화학적인자 시료 및 결과 관리가 일부 미흡(자체분석률 80% 이상)한 경우	□ 35
	③ 화학적인자 시료 및 결과 관리가 일부 미흡(자체분석률 70% 이상)한 경우	□ 20
	④ 화학적인자 시료 및 결과 관리가 미흡(자체분석률 70% 미만)한 경우	□ 5
평가 취지	○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자체 분석 여부 및 시료 관리의 적절성 평가 ○ 외부분석기관 의뢰 시 시료 의뢰 및 결과 관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방법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의 자체 분석률, 시료관리의 적절성, 외부 분석기관 의뢰 시 시료 의뢰 및 결과 관리의 적정성을 각각 평가한 후 최저 평가항목 점수 반영	
	<p>① 자체분석률(%) = (자체분석 시료수 ÷ 전체 시료수) × 100</p> <p>※ 평가대상기간 중 분석이 완료된 시료에 대해 평가</p> <p>② 자체 시료 분석 관리의 적정성 : 측정 결과표 무작위 5개 선정</p> <p>※ 시료인수·인계 및 분석실 시료관리 문서 확인</p> <p>③ 외부기관 의뢰 시 시료 및 결과 관리의 적정성 : 측정 결과표 무작위 5개 선정</p> <p>※ 시료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문서 확인</p> <p>※ ②, ③ 관련문서에는 측정자(인계자), 분석자(인수자), 측정일, 시료인수일, 시료 상태 및 보존방법, 분석대상 물질, 분석일, 결과값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분석률 90% 이상인 경우 “50” - 자체분석률 80% 이상인 경우 “35” - 자체분석률 70% 이상인 경우 “20” - 자체분석률 70% 미만인 경우 “5” <p>※ 자체(②) 및 외부(③) 분석의뢰 관련문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적정한 경우 한 단계 하향평가 (5개소 무작위 선정하여 1개소 이상 부적정일 경우)</p>	
증빙서류	○ 시료수 파악을 위한 문서	

B.2 측정결과 신뢰도

B.2.1	측정계획서 및 종합의견 작성의 적정성 (배점: 50)	
평가항목 B.2.1.1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예비조사 실시 대상의 측정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전회 측정 사업장 제외)	① 측정계획서를 항상 작성하고 내용이 적정하며, 전문 인력의 참여 수준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측정계획서를 항상 작성하고 내용이 적정하나, 전문 인력의 참여 수준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③ 측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필수작성 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④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작성 내용이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평가 취지	<p>○ 예비조사 실시 후 작성한 측정계획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작업환경측정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p>	
주요 착안사항	<p>○ 예비조사 시 측정계획서에 고시 제2020-44호 제17조(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제1항 제1호~제4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함</p> <p>○ 전문 인력*의 참여 수준**을 반영하여 평가 * 전문 인력 : 기술사, 지도사, 측정업무 경력 10년 이상 ** 참여 수준 : 측정계획서 작성자 확인 등</p>	
평가 방법	<p>○ 신규 측정 사업장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계획서 작성 시 고시 제17조에 따른 항목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p> <p>○ 평가기준 - 측정계획서를 항상 작성하고, 고시 제17조제1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하며, 전문 인력의 참여 수준이 모두 적정한 경우 “30” - 측정계획서를 항상 작성하고, 고시 제17조제1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하나, 전문 인력의 참여 수준이 미흡한 경우 “20” - 측정계획서를 80% 이상 작성하거나, 고시 제17조제1항의 모든 항목은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0” -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80% 미만), 고시 제17조의 항목이 하나이상 누락된 경우 “5” ※ 측정계획서상의 측정대상 유해물질과 측정결과표의 유해물질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평가</p> <p>○ 취급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명을 정확하게 측정계획서 상에 명시하고 있는지를 확인 ※ “혼합유기화합물”, “유기용제”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측정결과표 사본</p>	

B.2.1	측정계획서 및 종합의견 작성의 적정성 (배점: 50)	
평가항목 B.2.1.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작업 환경 측정 결과표 상 종합의견의 적정성	① 관련 규정에 준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관련 규정에 준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작성 대상공정을 누락하였거나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대책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취지	○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내용의 적정성(측정결과, 문제점, 대책 등)을 검토·평가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착안사항	○ “측정결과의 평가”,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대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은 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어야 함	
평가 방법	○ 소음 및 화학물질 노출기준 1/2초과 및 초과사업장 위주로 측정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평가 -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에 대한 기술적 사항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는 미흡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 - 노출기준의 1/2초과, 초과, CMR취급 공정에 대한 종합의견을 확인하여 해당 공정에 대한 취급물질의 유해성, 해당 공정의 상황,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대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미흡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 - 안전검사 대상(49종)의 노출수준 50% 이상 초과 시 국소배기장치에 한해 안전검사 실시 안내여부 평가 ○ 평가대상의 100% 적정 : “20”, 80% 이상 적정 : “12”, 80% 미만 적정 : “4”	
※ 초과공정에 대하여 “측정결과의 평가”,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대책”이 기술되지 않았거나, 초과공정에 대한 종합의견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적정		
증빙서류	○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	

B.2.2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신뢰성 확보 (배점: 30)	
평가항목 B.2.2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누적소음 노출량계의 신뢰성 확보	① 누적소음노출량계를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정을 수행하고, 기기환경이 적정하고, 기록물을 보관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누적소음노출량계의 기기환경은 적정하나, 비정기적으로 보정을 수행하고, 기록물 보관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③ 누적소음노출량계의 표준소음발생기가 없거나, 기기환경이 적정하지 않거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6
평가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기록 및 소음측정 기록물(데이터)을 확인, 소음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수행 일지(대장) 또는 누적소음노출량계에서 출력한 기록물을 통하여 보정수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보정수행 일자 포함) ○ 고시 제2020-44호 제26조(측정방법)에 따른 기기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함 ○ 법 제16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1조제4항에 따라 측정일자가 명기된 산출 기록물을 출력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수행 일지(대장)또는 누적소음 노출량계에서 출력한 기록물을 확인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수행 일지(대장)에는 소음계, 표준소음발생기, 보정일자, 보정수행자 포함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정하여야 함 -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출력물에 명시된 보정일자 확인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적소음노출량계 전부에 대하여 기기환경 설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일 현재 측정을 위하여 반출된 누적소음노출량계에 대해서는 출력기록물을 확인하여 평가 ○ 누적소음노출량계를 사용하여 소음을 측정한 사업장의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누적소음노출량계 산출 기록물의 보관 여부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보관: "30", 80% 이상 보관: "18", 80% 미만 보관: "6"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 관련 기록물 사본 	

B.2.3	시료 채취 전·후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배점: 30)	
평가항목 B.2.3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시료 채취 전·후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①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③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평가 취지	<p>○ 개인시료 포집기의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시료채취 전·후의 유량을 측정하여 평균유량으로 보정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시료 채취 전·후 개인시료 포집기의 유량보정 실시여부가 관련 대장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보정 결과가 분석 결과에 반영되어야 함</p> <p>- 관리대장에는 포집기 기종, 일시, 유량 보정자, 보정 횟수, 유량보정 기기명, 전·후 유량 또는 전·후 각각 평균유량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p>	
평가 방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개인시료 포집기 유량 보정 및 반영 여부를 평가</p> <p>- 결과표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의 유량 보정 수행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유량 보정 수행 여부와 그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p> <p>○ 평균 유량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보정기를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대장에 평균 유량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정(횟수별 유량 작성 생략 가능)</p> <p>○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는 유량보정수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6" 평가</p> <p>○ 평가대상의 100% 적정 : "30", 80% 이상 적정 : "18", 80% 미만 적정 : "6"</p> <p>※ 보정수행자에 대하여 보정을 수행하게 하는 등 보정방법을 확인하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 단계 하향평가</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4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배점: 30)	
평가항목 B.2.4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① 필터의 중량분석 및 대장 관리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필터의 중량분석 및 대장 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③ 필터의 중량분석 및 대장 관리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평가취지	<p>○ 전자저울은 민감도가 높아 중량을 계량할 때마다 변동이 있으므로 반드시 3회 이상 계량하여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측정 전·후 필터의 중량을 각각 3회 이상 계량하여야 하며, 관련 대장을 관리하여야 함</p>	
평가방법	<p>○ 기관별 측정사업장 명단 중 중금속 및 분진 등 필터의 중량분석을 실시한 사업장의 측정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관리 적정 여부를 평가 - 측정 전·후 모두 3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으로 인정</p> <p>○ 평가대상의 100% 적정 : "30", 80% 이상 적정 : "18", 80% 미만 적정 : "6"</p> <p>※ 분석자 또는 중량분석일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한 단계 하향 평가</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5	시료채취 시간, 개수의 준수 및 대장 작성 (배점: 30)	
평가항목 B.2.5.1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시료채취 시간, 개수의 준수 및 대장 작성	① 시료채취(시간, 개수) 및 채취관련 기록의 작성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시료채취(시간, 개수)는 적정하나 채취관련 기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시료채취(시간, 개수)가 부적정하거나 채취관련 기록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취지	<p>○ 시료채취 시간, 채취시료 개수 등 시료채취 시작단계부터 분석의뢰 단계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분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020-44호」에 의한 시료채취 시간 및 채취시료 개수의 준수여부를 평가</p> <p>○ 시료 채취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기록·관리(대장)의 적정성을 평가</p> <p>- 직독식 장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p>	
평가방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10개 선정, 시료채취 시간 및 시료채취 개수의 준수 여부 평가</p> <p>○ 시료 채취 관련 기록(대장) 보유 여부 및 기록내용의 적정성 확인</p> <p>- 시료 채취 관련 기록에는 채취일시, 유해인자, 시료채취시간, 작업장 온도·습도, 사업장명, 측정자명, 펌프번호, 측정 전·후 유량, 측정대상자명(시료번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p>- 시료채취(시간, 개수) 및 채취관련 기록의 작성이 100% 적정한 경우 “20”</p> <p>- 시료채취(시간, 개수)는 적정하나 채취관련 기록이 80% 이상 적정한 경우 “12”</p> <p>- 시료채취(시간, 개수)가 부적정하거나 채취관련 기록이 80% 미만 적정한 경우 “4”</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5	시료채취 시간, 개수의 준수 및 대장 작성 (배점: 30)	
평가항목 B.2.5.2	평가기준 (배점: 10)	평가결과
지역시료를 채취한 경우 그 사유 명시 여부	① 사유 명시가 모두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② 사유 명시가 80% 이상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③ 사유 명시가 80% 미만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평가취지	<p>○ 지역시료를 채취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제1항에 의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사유가 적정한지를 평가하여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함</p>	
주요 착안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규칙 제189조제1항</p> <p>④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2. (생략)</p> <p>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평가방법	<p>○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가 포함된 결과표 중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지역시료채취 사유(인정 가능한)의 명시 여부를 평가</p> <p>- 임핀저 사용, 근로자 거부, 안전상 작업방해, 1명의 근로자가 여러 유해인자에 노출 등</p> <p>○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가 포함된 결과표가 5개 미만인 경우 전수평가</p> <p>※ 모든 사업장에서 개인시료만 채취한 경우에는 "10"</p> <p>○ 평가 대상의 100% 적정 : "10", 80% 이상 적정 : "6", 80% 미만 적정 : "2"</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6	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 (배점: 100)	
평가항목 B.2.6.1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현장 공시료 포함 및 분석결과와 보정 여부	① 현장 공시료를 항상 포함하여 보정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취지	<p>○ 시료채취 및 운반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료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측정용 시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현장 공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분석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측정결과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시료 채취 시 현장 공시료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반영되어야 함</p>	
평가방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현장 공시료 포함 및 분석결과 보정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 채취 대장 등을 해당 측정 결과표와 비교하여 현장 공시료 포함 여부 확인 - 현장 공시료 분석결과와 보정 관련 서류 또는 대장을 확인하여 보정 여부 파악 <p>○ 현장 공시료가 세트별 1개 이상만 있어도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트별 시료가 10개 이상일 경우 공시료 2개 이상 권고 <p>○ 평가대상의 100% 적정 : "20", 80% 이상 적정 : "12", 80% 미만 적정 : "4"</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 현장 공시료의 분석결과 보정 관련 서류 또는 대장</p>	

B.2.6	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 (배점: 100)	
평가항목 B.2.6.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검량선 작성의 적정성 여부	① 검량선 작성이 모두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검량선 작성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검량선 작성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취지	<p>○ 분석기기의 감도는 분석조건 및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분석시료 세트별로 검량선 작성을 유도, 분석결과 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시료분석 시 분석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분석시료 세트별로 검량선을 작성하여야 하며, 분석결과가 검량선 농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함</p>	
평가방법	<p>○ 측정시기가 다른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검량선 작성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시료분석을 할 때마다 세트별로 검량선을 작성하는 경우 "20" * 세트 : 장비가 가동되는 기간 동안 1tray(100~150개 시료) - 매번 검량선을 작성하지는 않지만 1주일에 1회 작성하여 활용하는 경우 "12" - 검량선 작성 주기가 2주일을 넘어가는 경우 "4"</p> <p>○ 검량선, 공시료, 측정시료의 분석결과가 같은 시점에 작성되었는지 확인 - 분석결과가 검량선 농도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미량으로 검출된 샘플의 경우 영점 검량선 작성여부 확인)</p> <p>○ 검량선 작성과 탈착률 실험을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인정</p> <p>○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시약 또는 표정할 시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평가</p> <p>〈참고사항〉</p> <p>○ 결정계수(R^2) 값이 유기화합물의 경우 0.99, 금속의 경우 0.9 이상이 나오도록 권고</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6	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 (배점: 100)	
평가항목 B.2.6.3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시료의 탈착률(유기용제), 회수율(중금속) 실험 및 보정 수행 여부	① 실험 및 보정 수행이 모두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실험 및 보정 수행이 일부 부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실험 및 보정 수행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취지	<p>○ 측정대상물질을 채취한 후 시료전처리과정을 통해 시료채취 매체로부터 분석대상 물질이 얼마나 탈착(유기화합물) 또는 회수(중금속)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현장시료에 보정하여 분석결과 값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시료분석 시 분석시료 세트별로 시료의 탈착률(유기화합물) 및 회수율(중금속) 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반영되어야 함</p>	
평가방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시료의 탈착률(유기화합물) 및 회수율(중금속) 실험 및 결과의 보정 수행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분석을 할 때마다 세트별로 탈착률(회수율) 실험 및 결과 보정하는 경우 "20" - 매번 탈착률(회수율) 실험을 하지는 않지만 1주일에 1회 정도 하는 경우 "12" - 탈착률(회수율) 실험 및 결과 보정 주기가 2주일을 넘어가는 경우 "4" <p>※ 탈착, 회수 시료를 만들어 사용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6	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 (배점: 100)	
평가항목 B.2.6.4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분석결과물 (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 보관 여부	① 모든 분석결과물을 보관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분석결과물의 일부가 누락되어 보관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분석결과물 보관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취지	<p>○ 채취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물 보관 여부를 확인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채취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물은 해당 결과표와 함께 적정하게 보관되어야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법 제16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1조제4항</p> <p>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④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div>	
평가 방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채취시료의 분석결과물의 적정 보관 여부 평가 - PDF 등 전자파일 형태도 인정</p> <p>○ 평가대상의 100% 적정 : "20", 80% 이상 적정 : "12", 80% 미만 적정 : "4"</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6	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 (배점: 100)	
평가항목 B.2.6.5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기기분석결과의 측정결과표 기록 적정성	① 측정결과표 기록의 적정성이 100%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측정결과표 기록의 적정성이 80%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측정결과표 기록의 적정성이 80%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취지	<p>○ 사용된 분석기기, 측정치,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적정하게 기록함으로써 결과보고서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평가대상 사업장의 분석관련 서류상 사용 분석기기, 측정치,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확하게 기록되었는지를 평가</p>	
평가 방법	<p>○ 측정결과표상 ND(Not Detected), Trace 등 미량검출된 사업장을 무작위로 5개 선정</p> <p>○ 선정된 사업장의 분석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사용된 분석기기, 측정치,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이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모두 명확하게 기록된 경우 적정으로 평가</p> <p>- 측정결과표상 사용된 분석기기, 검출한계(LOD), 정량한계(LOQ), ND(Not Detected), Trace의 의미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함</p> <p>○ 평가대상의 100% 적정 : “20”, 80% 이상 적정 : “12”, 80% 미만 적정 : “4”</p>	
증빙 서류	<p>○ 분석결과서,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7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배점: 30)	
평가항목 B.2.7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① 평가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평가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③ 평가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평가취지	○ 결과표의 노출기준 적용 적정성을 확인·평가하여 결과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법 제106조에 따라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공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020-44호」 제34조에 따라 노출기준을 적정하게 보정하여야 함	
평가방법	○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 법 제106조에 따라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 유무를 파악 -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 계산의 적정성 여부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공정에 대하여 노출기준 보정의 적정성 여부 ○ 평가대상의 100% 적정 : "30", 80% 이상 적정 : "18", 80% 미만 적정 : "6"	
증빙서류	○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 현장 공시료의 분석결과 보정 관련 서류 또는 대장	

B.3 신규사업장 발굴률

B.3.1	신규사업장 발굴률 (배점: 50)		
평가항목 B.3.1	평가기준 (배점: 50)		평가결과
신규사업장 발굴률	위탁측정기관	자체 측정기관	
	① 발굴률 20% 이상	사내협력업체 모두 자체측정	<input type="checkbox"/> 50
	② 발굴률 15% ~ 20% 미만	사내협력업체 자체측정 15% 이상 실시	<input type="checkbox"/> 40
	③ 발굴률 10% ~ 15% 미만	사내협력업체 자체측정 10% 이상 실시	<input type="checkbox"/> 30
	④ 발굴률 5% ~ 10% 미만	사내협력업체 자체측정 5% 이상 실시	<input type="checkbox"/> 20
	⑤ 발굴률 5% 미만	사내협력업체 자체측정 5% 미만 실시	<input type="checkbox"/> 10
평가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중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 발굴하여 작업환경측정제도를 이행토록 유도 ○ 자체측정기관 소속 모기업에서 사내협력업체 작업환경측정 비율 제고를 통하여 모기업의 작업환경측정제도 이행 유도 		
주요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이후 측정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사업장 발굴률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장 발굴률은 평가대상 기간 내 해당 기관의 측정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측정비율을 비교하여 평가 - '20년 측정 실시율과 '21년 측정 실시율의 평균 적용 ○ 평가대상기간 내 자체측정기관 소속 모기업에서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자체측정 실시율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측정 실시율은 평가대상기간 내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에 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중 모기업 소속의 자체측정기관이 자체측정을 실시한 비율로 평가 - '20년 측정 실시율과 '21년 측정 실시율의 평균 적용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발굴률\ 또는\ 자체측정\ 실시율) + ('21년\ 발굴률\ 또는\ 자체측정\ 실시율)\} / 2$ ○ 위탁측정기관의 측정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측정비율을 비교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 내 결과표 송부가 완료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가 ○ 자체측정기관의 소속 모기업에서 사내협력업체 자체측정 실시율을 비교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 내 결과표 송부가 완료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자료를 활용한 사전 평가 		

B.4 고객 만족도

B.4.1	측정사업장 만족도 (배점: 40)	
평가항목 B.4.1	평가기준 (배점: 40)	평가결과
측정사업장 만족도	만족도 평균 평가점수 9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40
	만족도 평균 평가점수 8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30
	만족도 평균 평가점수 7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20
	만족도 평균 평가점수 70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평가 취지	<p>○ 측정사업장 만족도를 평가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의 질을 향상시키고 측정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에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p>	
평가 방법	<p>○ 측정사업장 30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각각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 ※ 30개소 미만인 경우 “이 지표의 평균점수” 적용 ※ 응답 사업장이 없는 경우 “이 지표의 평균점수” 적용 ※ 만족도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리서치 기관의 조사 결과 반영</p>	
증빙서류	<p>○ 외부 리서치 기관의 조사결과</p>	

B.5 그 밖의 제반사항

B.5.1	측정결과표(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 (배점: 40)	
평가항목 B.5.1	평가기준 (배점: 40)	평가결과
측정결과표 (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	송부기한 준수율 90% 이상	<input type="checkbox"/> 40
	송부기한 준수율 80% 이상	<input type="checkbox"/> 30
	송부기한 준수율 70% 이상	<input type="checkbox"/> 20
	송부기한 준수율 70%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평가취지	<p>○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8조제2항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사업장에 신속한 보고서 전달 및 적기에 현장의 개선활동 유도</p>	
주요 착안사항	<p>○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020-44호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에 명시된 송부기한이 준수되어야 함</p>	
평가방법	<p>○ 기관에서 공단으로 전송된 전산자료(최종 전산파일 접수일자 기준)를 확인하여 평가 ※ 측정비용지원 사업의 결과표의 보고서 송부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p>	
증빙서류	<p>○ 공단 전산자료</p>	

B.5.2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도 (가점: 최대 +10)	
평가항목 B.5.2	평가기준 (가점 : 최대 +10점)	평가결과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도	평가기간 내 60개소 이상 신규사업장 발굴(매년)	<input type="checkbox"/> +10
	평가기간 내 60개소 이상 신규사업장 발굴(2년 중 1회)	<input type="checkbox"/> +5
평 가 취 지	<p>○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작업환경측정 제도 이행률을 위한 노력도에 대한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이후 측정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사업장 발굴률 평가</p> <p>- 평가기간 내 해당 기관의 측정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측정비율을 비교하여 평가</p>	
평 가 방 법	<p>○ 평가대상 : 시행령 별표 29의 인력기준 상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360개소 이상인 작업환경측정기관</p> <p>○ 평가기간 내 기관의 측정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측정비율을 비교하여 평가</p> <p>※ 평가대상기간 내 결과표 송부가 완료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가</p> <p>- 평가기간 내 60개소 이상 신규사업장 발굴(매년) : +10점</p> <p>- 평가기간 내 60개소 이상 신규사업장 발굴(2년 중 1회) : +5점</p>	
증빙서류	<p>○ 공단 전산자료</p>	

B.5.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등록(가점: +10) [신설]	
평가항목 B.5.3	평가기준 (가점: +10)	평가결과
자체평가의 적정성	① 평가보고서를 K2B에 등록하였으며, 내용의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① 평가보고서를 K2B에 등록하였으나, 작성내용이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5
	③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내용 50% 이상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0
평 가 취 지	<p>○ 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감소 및 자체 수준 향상 노력도 제고를 유도</p>	
주요 착안사항	<p>○ K2B 입력 현황을 확인하여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여부를 평가</p> <p>○ K2B 전산에 기관의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기한 및 작성내용을 확인하여 평가</p>	
평 가 방 법	<p>○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K2B 전산에 등록 및 모든 항목을 평가한 경우 “+10”</p> <p>○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K2B 전산에 등록하였으나, 전체 항목 중 50% 미만에 대해 작성하지 않은 경우 “+5”</p> <p>○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K2B 전산에 미등록 또는 작성했으나 전체 항목 중 50% 이상에 대해 작성하지 않은 경우 “0”</p> <p>※ 공고된 양식으로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p> <p>※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K2B에 등록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p>	
증빙서류	<p>○ 자체평가 결과보고서</p>	